

第284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11月12日(木)

場 所 第3會議場(245號)

議事日程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청원
111.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審査된案件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9
- o. 소위원장(장윤석·서갑원) 인사 10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발의)(이명수 의원 외 9인 발의) 11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김진표·김재윤·노영민·권선택·이시종·양승조·이광재·송민순·오제세·변재일 의원 발의) 11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이계진·강성천·윤석용·임태희·강창일·조전혁·현경병·손범규·안상수·김성수·정갑윤·임두성·구본철 의원 발의) 11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강창일·강길부·김우남·윤석용·

김정권 · 송민순 · 양승조 · 장세환 · 임두성 · 송영선 · 안상수 · 김성순 · 이미경 · 박선숙 · 최철국 · 홍정욱 의원 발의)	11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강창일 · 김희철 · 이한성 · 김종률 · 안민석 · 박기춘 · 이명규 · 김재균 · 안상수 · 문희상 · 장세환 · 이혜훈 · 최문순 · 이진삼 · 신상진 의원 발의)	11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 · 우제창 · 김희철 · 박종희 · 양정례 · 이한성 · 홍정욱 · 이정선 · 정하균 · 김소남 · 유성엽 · 신상진 · 이화수 · 이진삼 · 임두성 의원 발의)	11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홍정욱 · 정하균 · 이진삼 · 김성곤 · 박은수 · 이한성 · 김성태 · 김희철 · 강기갑 · 홍희덕 · 권영길 · 이정희 의원 발의)	11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김성수 · 유성엽 · 유기준 · 안상수 · 김태원 · 구본철 · 신상진 · 강석호 · 박종희 · 홍장표 · 김종률 · 안효대 · 이진삼 · 이한성 · 송광호 · 유재중 · 황우여 · 김성곤 · 이해봉 · 박대해 · 김영우 · 양정례 · 홍일표 의원 발의)	11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 · 유정복 · 이한성 · 양정례 · 유성엽 · 구본철 · 남경필 · 손숙미 · 안홍준 · 신상진 · 정하균 · 이진삼 · 이정선 · 박영아 · 황우여 · 박대해 · 정해걸 · 윤영 의원 발의)	11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강창일 · 김진표 · 김충조 · 박기춘 · 백재현 · 신학용 · 오제세 · 우제창 · 이석현 의원 발의)	11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신영수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정해걸 · 정영희 · 이혜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	11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유정현 · 유성엽 · 장세환 · 이진삼 · 김종률 · 안홍준 · 이한성 · 정하균 · 김세연 · 박선숙 의원 발의)	11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조해진 · 이혜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	11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신명수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이혜훈 · 나경원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 박보환 의원 발의)	11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 · 한선교 · 구본철 · 양정례 · 강석호 · 이한성 · 이진삼 · 정의화 · 유성엽 · 안상수 · 정해걸 · 이성현 · 박보환 의원 발의)	12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강창일 · 진병헌 · 정장선 · 김진표 · 양정례 · 우제창 · 오제세 · 박병석 · 김재윤 · 양승조 · 안민석 · 전해숙 · 최재성 · 우윤근 의원 발의)	12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노철래 · 이한성 · 김소남 · 김성조 · 구본철 · 정해걸 · 조윤선 · 강길부 · 김영우 · 김학송 · 양정례 · 송훈석 · 신성범 · 김동성 · 이화수 · 송영선 의원 발의)	12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유기준 · 양정례 · 백성운 · 송영선 · 김성태 · 강승규 · 이정선 · 김태환 · 윤석용 의원 발의)	12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 · 강석호 · 강승규 · 김성태 · 김태원 · 김효재 · 나경원 · 남경필 · 박종희 · 배은희 · 백성운 · 손범규 · 정병국 의원 발의)	12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혜훈 · 김재윤 · 김동철 · 곽정숙 · 이정희 · 이미경 · 이애주 · 최문순 · 신낙균 · 김금래 · 박선숙 의원 발의)	12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 · 이종걸 · 박기춘 · 이광재 · 양승조 ·	

- 장세환 · 김희철 · 안규백 · 신학용 · 김충조 · 이용섭 · 김성순 · 김우남 · 홍희덕 의원 발의) 12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 박기춘 · 최재성 · 양승조 · 김종률 · 조경태 · 김충조 · 김재윤 · 박선숙 · 이광재 의원 발의) 12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이시중 · 변재일 · 우제창 · 이광재 · 김종률 · 백재현 · 김희철 · 이명수 · 노영민 · 오제세 · 박상돈 의원 발의) 12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발의)(김유정 의원 외 82인 발의) 12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정해걸 · 박대해 · 허태열 · 안상수 · 이해훈 · 박보환 · 이한성 · 정하균 · 박종희 · 김종률 · 이진삼 · 강석호 의원 발의) 12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 · 권영진 · 김성수 · 김성태 · 김을동 · 김태환 · 노철래 · 백성운 · 안상수 · 유성엽 · 이재선 · 이철우 · 정갑윤 · 정영희 · 한선교 의원 발의) 12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 · 김희철 · 이한성 · 이종혁 · 백성운 · 김재윤 · 이진삼 · 이인기 · 구분철 · 정병국 · 박종희 · 임동규 · 김효재 · 송영선 의원 발의) 12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 · 김장수 · 김용구 · 변웅전 · 이해봉 · 임영호 · 이상민 · 류근찬 · 김영진 · 김낙성 · 김창수 의원 발의) 12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 · 강석호 · 김광립 · 김태환 · 안상수 · 유기준 · 유재중 · 이정재 · 정해걸 · 정희수 · 조원진 · 최구식 · 현기환 · 홍사덕 · 홍장표 의원 발의) 12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김정권 · 강석호 · 김영록 · 이무영 · 장세환 · 강운태 · 정하균 · 황우여 · 우제창 · 정병국 의원 발의) 12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 · 최규식 · 이무영 · 권경석 · 조진형 · 강기정 · 김유정 · 김충조 · 김희철 · 이윤석 · 김태원 · 신지호 · 유정현 · 이은재 · 이인기 · 장제원 · 정갑윤 의원 발의) 12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이한성 · 이진삼 · 김정권 · 유기준 · 신상진 · 구분철 · 박종희 · 송영선 · 김희철 · 원희목 · 김우남 · 김재윤 · 이정선 · 최영희 · 최인기 · 김소남 · 김효재 · 강석호 · 손범규 · 박보환 · 김동성 의원 발의) 12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12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안민석 · 송영길 · 최영희 · 김동철 · 강기정 · 변재일 · 이석현 · 문학진 · 김춘진 · 홍재형 의원 발의) 13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임동규 · 이한성 · 김정훈 · 이군현 · 이춘식 · 이윤성 · 최병국 · 정영희 · 허천 · 신성범 · 백성운 의원 발의) 13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이한성 · 임동규 · 유성엽 · 김정훈 · 이군현 · 이춘식 · 이윤성 · 최병국 · 정영희 · 허천 · 신성범 의원 발의) 13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조윤선 · 전혜숙 · 이계진 · 안홍준 · 조문환 · 송광호 · 주호영 · 양승조 · 김상희 · 김재윤 · 이윤석 · 최문순 의원 발의) 13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유정현 · 김성희 · 정진섭 · 정갑윤 · 권경석 · 강성천 · 손숙미 · 홍장표 · 고승덕 · 유재중 · 이주영 의원 발의) 13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 · 최구식 · 성윤환 · 유승민 · 이한성 · 유성엽 · 나경원 · 양정례 · 김성곤 · 하균 · 김정훈 · 임동규 의원 발의) 13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 최구식 · 박민식 · 유승민 · 유기준 · 김무성 · 김광립 · 유성엽 · 박종희 · 이종혁 · 이명규 · 조문환 · 이학재 의원 발의) 13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 최구식 · 박민식 · 유승민 · 유기준 ·

김무성 · 김광림 · 유성엽 · 이종혁 · 이명규 · 조문환 의원 발의)	13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 · 송민순 · 유성엽 · 정미경 · 김기현 · 이한성 · 권영진 · 안상수 · 임해규 · 김성수 · 이시중 의원 발의)	13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 · 심대평 · 김용구 · 이재선 · 이용희 · 변웅전 · 김낙성 · 이명수 · 임영호 · 이회창 · 김창수 · 박상돈 · 류근찬 · 이진삼 · 조순형 · 이영애 · 박선영 의원 발의)	13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양승조 · 홍재형 · 강창일 · 유원일 · 유성엽 · 안민석 · 권영길 · 김재균 · 강기갑 의원 발의)	13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강창일 · 양승조 · 김동철 · 김재균 · 김우남 · 최재성 · 최인기 · 이미경 · 안민석 의원 발의)	13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안상수 · 유기준 · 정해걸 · 황우여 · 이화수 · 이인기 · 오제세 · 안효대 · 이한성 · 손범규 · 배영식 · 김충환 · 김태환 · 김성조의원 발의)	13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김진표 · 김재윤 · 천정배 · 안민석 · 신학용 · 박지원 · 조배숙 · 김희철 · 김춘진 · 김영록 · 최규성 · 정해걸 · 이춘석 · 김성순 · 강운태 의원 발의)	13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 · 박민식 · 이화수 · 이계진 · 최옥철 · 김우남 · 정해걸 · 이사철 · 조문환 · 이윤석 · 김영우 · 김낙성 의원 발의)	13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 · 우윤근 · 김창수 · 송훈석 · 임영호 · 최인기 · 이재선 · 심대평 · 최철국 · 류근찬 · 김용구 · 이영애 · 이상민 의원 발의)	13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김우남 · 이미경 · 김동철 · 양승조 · 강창일 · 최영희 · 최인기 · 전해숙 · 서갑원 · 이용섭 · 안민석 의원 발의)	13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이한성 · 주광덕 · 신영수 · 김성순 · 차명진 · 김종률 · 우제창 · 김성태 · 정해걸 · 윤석용 · 이정선 의원 발의)	13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 · 변웅전 · 심대평 · 이회창 · 박선영 · 이재선 · 이명수 · 김용구 · 김낙성 · 이진삼 · 류근찬 · 임영호 · 박상돈 · 조순형 · 이상민 · 이영애 · 김창수 · 문국현 의원 발의)	13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곽정숙 의원 발의)	13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우남 · 박은수 · 박주선 · 백원우 · 서갑원 · 안민석 · 양승조 · 이광재 · 최철국 의원 발의)	14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양승조 · 김동철 · 서갑원 · 이미경 · 김재균 · 김우남 · 김상희 · 이석현 · 이용삼 · 김충조 의원 발의)	14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이해훈 · 유기준 · 김정권 · 김태원 · 유승민 · 이화수 · 손범규 · 이해봉 · 유성엽 · 안상수 · 윤상현 · 신영수 · 강석호 의원 발의)	14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진성호 · 황우여 · 안상수 · 안효대 · 권경석 · 임두성 · 고승덕 · 원희목 · 김성수 · 이한성 의원 발의)	14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 · 노철래 · 정영희 · 송영선 · 박기춘 · 강운태 · 손범규 · 송민순 · 김을동 · 정하균 의원 발의)	14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 · 이한성 · 임동규 · 이정선 · 이성현 · 한선교 · 박기춘 · 변재일 · 박상돈 · 박순자 · 원유철 · 정해걸 · 강석호 · 배은희 의원 발의)	14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 · 조문환 · 손범규 · 윤석용 · 강석호 · 박준선 · 황영철 · 이성현 · 이사철 · 남경필 · 김영우 의원 발의)	14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유원일 · 신영수 · 현경병 · 안효대 · 이정선 · 이한성 · 이윤성 · 손범규 · 오제세 · 황영철 · 이낙연 · 진성호 의원 발의)	14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양승조 · 변재일 · 천정배 · 김창수 · 이종걸 · 강창일 · 김영진 · 장세환 · 김효석 · 이미경 · 강기정 · 박상돈 · 이명수 · 박선숙 · 문학진 · 강봉균 · 우제창 · 김희철 · 최규성 · 이낙연 의원 발의) 14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 · 송민순 · 안규백 · 박주선 · 우제창 · 강창일 · 이미경 · 최규식 · 박기춘 · 이두아 · 김재윤 · 이인기 · 이낙연 · 서종표 · 문학진 · 김상희 · 김춘진 · 전해숙 의원 발의) 14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김성수 · 안효대 · 이정선 · 이성현 · 이화수 · 임두성 · 김효재 · 이한성 · 김장수 의원 발의) 14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 · 김을동 · 김성수 · 노철래 · 박대해 · 김정권 · 정영희 · 이한성 · 정하균 · 심대평 의원 발의) 14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권선택 · 김창수 · 심대평 · 이명수 · 이상민 · 이재선 · 이용희 · 임영호 · 주승용 의원 발의) 14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임동규 · 신영수 · 정수성 · 김영선 · 박상돈 · 강명순 · 정해걸 · 정갑윤 · 손범규 의원 발의) 14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이주영 · 김창수 · 심대평 · 이재선 · 권선택 · 안민석 · 김낙성 · 임영호 · 박상돈 · 이낙연 의원 발의) 14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손숙미 · 이정선 · 강성천 · 고승덕 · 신지호 · 배은희 · 여상규 · 나성린 · 강석호 · 윤석용 · 정미경 · 김금래 · 김소남 의원 발의) 14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김소남 · 손숙미 · 정미경 · 강명순 · 공성진 · 이군현 · 이애주 · 이종구 · 이정현 · 이화수 · 김옥이 · 이은재 · 조윤선 · 김금래 · 안홍준 · 이한성 · 권경석 · 황진하 · 정옥임 · 신상진 · 김성수 · 강승규 · 이병석 · 박영아 의원 발의) 14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김정권 · 손범규 · 이명수 · 이한성 · 임두성 · 김성수 · 김낙성 · 고승덕 · 신상진 의원 발의) 14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유기준 · 강성천 · 유성엽 · 황우여 · 한선교 · 강석호 · 정미경 · 박준선 · 이명수 · 김을동 · 박상은 의원 발의) 14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 · 김영록 · 신성범 · 김종률 · 조진래 · 이인제 · 송훈석 · 송광호 · 이용삼 · 정병국 의원 발의) 14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최재성 · 조경태 · 이윤석 · 박병석 · 김유정 · 이미경 · 신낙균 · 김충조 · 오제세 · 최철국 · 김동철 · 최규식 · 이강래 · 안규백 · 김재균 · 원혜영 · 김부겸 · 강기정 · 장세환 · 노영민 의원 발의) 15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원유철 · 안효대 · 강길부 · 이윤석 · 김성조 · 최병국 · 신성범 · 이진복 · 김소남 · 김기현 · 최구식 의원 발의) 15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강성천 · 김성수 · 김성희 · 김세연 · 박대해 · 박민식 · 서상기 · 이종혁 · 이화수 · 정갑윤 · 조원진 · 황영철 의원 발의) 15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 · 신학용 · 정영희 · 유기준 · 최영희 · 유성엽 · 손범규 · 이해봉 · 이인기 · 박은수 · 이한성 의원 발의) 15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조영택 · 최영희 · 송민순 · 김춘진 · 백원우 · 전현희 · 최재성 · 박은수 · 강창일 의원 발의) 15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신학용 · 김상희 · 양승조 · 박은수 · 김성순 · 강운태 · 우제창 · 백재현 · 김우남 의원 발의) 15
8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이시중 · 우제창 · 변재일 · 이광재 · 백재현 · 김희철 · 이명수 · 노영민 · 오제세 · 박상돈 의원 발의) 15
8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김희철 · 이용삼 · 김재균 · 김동철 · 송영길 · 양승조 · 강창일 · 조영택 · 이미경 · 김우남 · 김종률 의원 발의) 15

- 8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최영희 · 김동철 · 강기정 · 변재일 · 안민석 · 이석현 · 문학진 · 김춘진 · 홍재형 의원 발의) 15
- 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 · 김성태 · 신성범 · 김선동 · 권택기 · 박민석 · 정태근 · 주광덕 · 황영철 · 김성식 · 조전혁 · 이한성 · 현기환 · 서상기 · 김세연 · 이인기 · 윤석용 · 남경필 의원 발의) 15
- 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 · 정태근 · 현경병 · 백성운 · 강승규 · 조문환 · 김영우 · 조진래 · 이화수 · 김재경 의원 발의) 15
- 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 · 우제창 · 김희철 · 양정례 · 고승덕 · 김성태 · 정해걸 · 정하균 · 김소남 · 정양석 · 이종구 · 유성엽 · 신상진 · 이진삼 · 임두성 · 김재윤 의원 발의) 15
- 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유기준 · 양정례 · 백성운 · 고승덕 · 송영선 · 김성태 · 강승규 · 이정선 · 김태환 의원 발의) 15
- 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발의)(김희철 의원 외 82인 발의) 15
- 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 · 강석호 · 김광림 · 김태환 · 안상수 · 유기준 · 유재중 · 이경재 · 정해걸 · 정희수 · 조원진 · 최구식 · 현기환 · 홍사덕 · 홍장표 의원 발의) 15
- 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15
- 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 · 심대평 · 김용구 · 이재선 · 이용희 · 변용전 · 김낙성 · 이명수 · 임영호 · 이회창 · 김창수 · 박상돈 · 류근찬 · 이진삼 · 조순형 · 이영애 · 박선영 의원 발의) 15
- 9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김정권 · 김성수 · 신지호 · 임해규 · 정해걸 · 이범래 · 김소남 · 이은재 · 김성조 · 이명규 의원 발의) 15
- 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원유철 · 백성운 · 이근현 · 임동규 · 현경병 · 최병국 · 진성호 · 김소남 · 이춘식 의원 발의) 15
- 9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양승조 · 김재균 · 강창일 · 김우남 · 김동철 · 이미경 · 최규식 · 이석현 · 김효석 · 최영희 · 김상희 의원 발의) 15
- 9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안민석 · 강창일 · 김종률 · 전해숙 · 유성엽 · 김성곤 · 원혜영 · 이두아 · 최영희 의원 발의) 15
- 9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 · 고승덕 · 김세연 · 김영진 · 김성태 · 김충환 · 김춘진 · 노철래 · 박진 · 박상은 · 박종희 · 여상규 · 이경재 · 이주영 · 이철우 · 유기준 · 장윤석 · 정미경 · 조전혁 · 황우여 의원 발의) 16
- 9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 · 정태근 · 현경병 · 백성운 · 강승규 · 조문환 · 김영우 · 조진래 · 이화수 · 김재경 의원 발의) 16
- 9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이정희 · 홍희덕 · 권영길 · 강기갑 · 박선영 · 김춘진 · 신낙균 · 박은수 · 유성엽 · 조승수 · 최영희 의원 발의) 16
- 9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이달곤 · 정희수 · 주성영 · 고승덕 · 이주영 · 임해규 · 이한성 · 원희목 · 임두성 의원 발의) 16
- 10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윤석용 · 고승덕 · 김태원 · 정병국 · 정양석 · 김동성 · 신상진 · 남경필 · 이화수 · 황영철 · 장광근 · 이윤성 · 김효재 의원 발의) 16
- 10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종률 · 정하균 · 강기정 · 양승조 · 유선호 · 박기춘 · 이낙연 · 서종표 · 김희철 · 홍희덕 · 이윤석 · 황영철 의원 발의) 16
- 10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 · 이인제 · 이재선 · 현기환 · 강창일 ·

	김세웅·윤영·김성순·신영수·박상은 의원 발의)	16
10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양승조·유성엽·최규성·안상수·박기춘·이화수·안홍준·김재균·김희철·정갑윤·김충환·정하균·황우여·장세환·김성수·이명수 의원 발의)	16
10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10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김정권·임두성·김재윤·김성수·이한성·유성엽·안홍준·신상진·박대해 의원 발의)	16
10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16
10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16
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노철래·정영희·송영선·박기춘·강운태·손범규·송민순·김을동·정하균 의원 발의)	16
10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이한성·안상수·오제세·홍장표·임동규·주광덕·안효대·손범규·김소남·정미경·나경원·이성현·유재중·유성엽·박은수·진성호·이정현·김영우 의원 발의)	16
110.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청원(박준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
111.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시중·최육철·정해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

(10시07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위원으로서 활동해 왔던 주호영 의원께서 사임을 하시고 10월 12일자로 한나라당의 이은재 위원께서 우리 정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이은재 위원께서 보임되어 오신 것을 뜨겁게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이은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李恩宰 委員** 우선 이렇게 사보임을 해 주시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여성 지방의원들의 공천 할당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감사합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충조**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특위에는 현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0건의 법안 그리고 청원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법안 및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교섭단체 간사간의 협의를 거친 결과 소위원회는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정당및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 이렇게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2개의 소위원회는 각각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의 특위 간사이신 장윤석 위원께서 그리고 정당및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장은 민주당의 우리 특위 간사이신 서갑원 위원께서 각각 맡았으면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 명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비교섭단체 위원들의 배속이 약간 조정이 되지 아니해서 소위원회의 배속 위원 여부는 위원장과 그리고 양당의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확정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소위원장(장윤석·서갑원) 인사

(10시10분)

○위원장 김충조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소위원장과서 각각 인사말씀이 있겠습니까.

장 소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장윤석 위원입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마는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선거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선진화된 선거 질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와 관련되는 관계법 조항의 또 개정예 박차를 가해서 지방선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다음은 서갑원 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위원 서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정당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원활히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당법 또 정치자금 관계법은 여러 가지로 우리 정치권에서 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 단체나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또 정당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이를 현실화 시켜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법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법안 심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내년 6월 2일에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역산을 하면 내년 1월부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가 있어야 되고 또 내년 2월 2일부터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정들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법안을 심의 개정해서 의결 통과시켜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시도의회 의원 지역구 구역 불합리 문제 이것은 2007년 3월 29일자에 결정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 이것도 2009년 3월 26일 날 현재의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정개특위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의회 의원 지역구 구역 개정을 비롯해서 선거운동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그리고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안 108개, 그리고 관련 청원 2개 해서 110개의 법안과 청원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기국회 회기 기간 내에 이러한 것들이 토론되고 논의되어서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갖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폭넓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기국회 기간 내에 원만하고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장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법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순서인데요, 우리 특위에 회부되어 아직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안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법률안은

이계진 의원, 양승조 의원, 그리고 서갑원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특위에 회부되어서 아직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들 3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하기 위해서 밟아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3개의 법안을 오늘 우리 특위의 의사일정에 포함을 시켜서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의결을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에 의하면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에 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9항까지 108건의 법률안을 오늘 우리 특위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발의)(이명수 의원 외 9인 발의)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김진표 · 김재윤 · 노영민 · 권선택 · 이시종 · 양승조 · 이광재 · 송민순 · 오제세 · 변재일 의원 발의)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이계진 · 강성천 · 윤석용 · 임태희 · 강창일 · 조전혁 · 현경병 · 손범규 · 안상수 · 김성수 · 정갑윤 · 임두성 · 구분철 의원 발의)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강창일 · 강길부 · 김우남 · 윤석용 · 김정권 · 송민순 · 양승조 · 장세환 · 임두성 · 송영선 · 안상수 · 김성순 · 이미경 · 박선숙 · 최철국 · 홍정욱 의원 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강창일 · 김희철 · 이한성 · 김종률 · 안민석 · 박기춘 · 이명규 · 김

재균 · 안상수 · 문희상 · 장세환 · 이해훈 · 최문순 · 이진삼 · 신상진 의원 발의)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 · 우제창 · 김희철 · 박종희 · 양정례 · 이한성 · 홍정욱 · 이정선 · 정하균 · 김소남 · 유성엽 · 신상진 · 이화수 · 이진삼 · 임두성 의원 발의)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홍정욱 · 정하균 · 이진삼 · 김성곤 · 박은수 · 이한성 · 김성태 · 김희철 · 강기갑 · 홍희덕 · 권영길 · 이정희 의원 발의)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김성수 · 유성엽 · 유기준 · 안상수 · 김태원 · 구분철 · 신상진 · 강석호 · 박종희 · 홍장표 · 김종률 · 안효대 · 이진삼 · 이한성 · 송광호 · 유재중 · 황우여 · 김성곤 · 이해봉 · 박대해 · 김영우 · 양정례 · 홍일표 의원 발의)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 · 유정복 · 이한성 · 양정례 · 유성엽 · 구분철 · 남경필 · 손숙미 · 안홍준 · 신상진 · 정하균 · 이진삼 · 이정선 · 박영아 · 황우여 · 박대해 · 정해걸 · 윤영 의원 발의)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강창일 · 김진표 · 김충조 · 박기춘 · 백재현 · 신학용 · 오제세 · 우제창 · 이석현 의원 발의)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신영수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정해걸 · 정영희 · 이해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유정현 · 유성엽 · 장세환 · 이진삼 · 김종률 · 안홍준 · 이한성 · 정하균 · 김세연 · 박선숙 의원 발의)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조해진 · 이해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

- 준·안상수·유성엽·신명수·박종희·강석호·송광호·황우여·이혜훈·나경원·김성태·이상민·정하균·박보환 의원 발의)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한선교·구본철·양정례·강석호·이한성·이진삼·정의화·유성엽·안상수·정해걸·이성현·박보환 의원 발의)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전병헌·정장선·김진표·양정례·우제창·오제세·박병석·김재윤·양승조·안민석·전혜숙·최재성·우윤근 의원 발의)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노철래·이한성·김소남·김성조·구본철·정해걸·조운선·강길부·김영우·김학송·양정례·송훈석·신성범·김동성·이화수·송영선 의원 발의)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유기준·양정례·백성운·송영선·김성태·강승규·이정선·김태환·윤석용 의원 발의)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강석호·강승규·김성태·김태원·김효재·나경원·남경필·박종희·배은희·백성운·손범규·정병국 의원 발의)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혜훈·김재윤·김동철·곽정숙·이정희·이미경·이애주·최문순·신낙균·김금래·박선숙 의원 발의)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이종걸·박기춘·이광재·양승조·장세환·김희철·안규백·신학용·김충조·이용섭·김성순·김우남·홍희덕 의원 발의)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박기춘·최재성·양승조·김종률·조경태·김충조·김재윤·박선숙·이광재 의원 발의)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이시중·변재일·우제창·이광재·김종률·백재현·김희철·이명수·노영민·오제세·박상돈 의원 발의)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발의)(김유정 의원 외 82인 발의)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정해걸·박대해·허태열·안상수·이혜훈·박보환·이한성·정하균·박종희·김종률·이진삼·강석호 의원 발의)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권영진·김성수·김성태·김을동·김태환·노철래·백성운·안상수·유성엽·이재선·이철우·정갑윤·정영희·한선교 의원 발의)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김희철·이한성·이종혁·백성운·김재윤·이진삼·이인기·구본철·정병국·박종희·임동규·김효재·송영선 의원 발의)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김장수·김용구·변웅전·이해봉·임영호·이상민·류근찬·김영진·김낙성·김창수 의원 발의)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강석호·김광립·김태환·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경재·정해걸·정희수·조원진·최구식·현기환·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정권·강석호·김영록·이무영·장세환·강운태·정하균·황우여·우제창·정병국 의원 발의)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최규식·이무영·권경석·조진형·강기정·김유정·김충조·김희철·이윤석·김태원·신지호·유정현·이은재·이인기·장제원·정갑윤 의원 발의)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한성·이진삼·김정권·유기준·신상진·구본철·박종희·송영선·김희철·원희목·김우남·김재윤·이정선·최영희·최인기·김소남·김효재·강석호·손범규·박보환·김동성 의원 발의)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

- 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안민석·송영길·최영희·김동철·강기정·변재일·이석현·문학진·김춘진·홍재형 의원 발의)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임동규·이한성·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허천·신성범·백성운 의원 발의)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한성·임동규·유성엽·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허천·신성범 의원 발의)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조운선·전혜숙·이계진·안홍준·조문환·송광호·주호영·양승조·김상희·김재윤·이윤석·최문순 의원 발의)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유정현·김성희·정진섭·정갑윤·권경석·강성천·손숙미·홍장표·고승덕·유재중·이주영 의원 발의)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최구식·성윤환·유승민·이한성·유성엽·나경원·양정래·김성곤·하균·김정훈·임동규 의원 발의)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유기준·김무성·김광림·유성엽·박종희·이종혁·이명규·조문환·이학재 의원 발의)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유기준·김무성·김광림·유성엽·이종혁·이명규·조문환 의원 발의)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송민순·유성엽·정미경·김기현·이한성·권영진·안상수·임해규·김성수·이시종 의원 발의)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이용희·변용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이진삼·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양승조·홍재형·강창일·유원일·유성엽·안민석·권영길·김재균·강기갑 의원 발의)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강창일·양승조·김동철·김재균·김우남·최재성·최인기·이미경·안민석 의원 발의)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안상수·유기준·정해걸·황우여·이화수·이인기·오제세·안효대·이한성·손범규·배영식·김충환·김태환·김성조 의원 발의)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진표·김재윤·천정배·안민석·신학용·박지원·조배숙·김희철·김춘진·김영록·최규성·정해걸·이춘석·김성순·강운태 의원 발의)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박민식·이화수·이계진·최옥철·김우남·정해걸·이사철·조문환·이윤석·김영우·김낙성 의원 발의)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우윤근·김창수·송훈석·임영호·최인기·이재선·심대평·최철국·류근찬·김용구·이영애·이상민 의원 발의)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우남·이미경·김동철·양승조·강창일·최영희·최인기·전혜숙·서갑원·이용섭·안민석 의원 발의)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한성·주광덕·신영수·김성순·차명진·김종률·우제창·김성태·정해걸·윤석용·이정선 의원 발의)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변용전·심대평·이회창·박선영·이재선·이명수·김용구·김낙성·이진삼·류근찬·임영호·박상돈·조순형·이상민·이영애·김창수·문국현 의원 발의)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우남 · 박은수 · 박주선 · 백원우 · 서갑원 · 안민석 · 양승조 · 이광재 · 최철국 의원 발의)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양승조 · 김동철 · 서갑원 · 이미경 · 김재균 · 김우남 · 김상희 · 이석현 · 이용삼 · 김충조 의원 발의)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이혜훈 · 유기준 · 김정권 · 김태원 · 유승민 · 이화수 · 손범규 · 이해봉 · 유성엽 · 안상수 · 윤상현 · 신영수 · 강석호 의원 발의)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진성호 · 황우여 · 안상수 · 안효대 · 권경석 · 임두성 · 고승덕 · 원희목 · 김성수 · 이한성 의원 발의)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 · 노철래 · 정영희 · 송영선 · 박기춘 · 강운태 · 손범규 · 송민순 · 김을동 · 정하균 의원 발의)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 · 이한성 · 임동규 · 이정선 · 이성현 · 한선교 · 박기춘 · 변재일 · 박상돈 · 박순자 · 원유철 · 정해결 · 강석호 · 배은희 의원 발의)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 · 조문환 · 손범규 · 윤석용 · 강석호 · 박준선 · 황영철 · 이성현 · 이사철 · 남경필 · 김영우 의원 발의)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유원일 · 신영수 · 현경병 · 안효대 · 이정선 · 이한성 · 이윤성 · 손범규 · 오제세 · 황영철 · 이낙연 · 진성호 의원 발의)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양승조 · 변재일 · 천정배 · 김창수 · 이종걸 · 강창일 · 김영진 · 장세환 · 김효석 · 이미경 · 강기정 · 박상돈 · 이명수 · 박선숙 · 문학진 · 강봉균 · 우제창 · 김희철 · 최규성 · 이낙연 의원 발의)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 · 송민순 · 안규백 · 박주선 · 우제창 · 강창일 · 이미경 · 최규식 · 박기춘 · 이두아 · 김재윤 · 이인기 · 이낙연 · 서종표 · 문학진 · 김상희 · 김춘진 · 전해숙 의원 발의)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김성수 · 안효대 · 이정선 · 이성현 · 이화수 · 임두성 · 김효재 · 이한성 · 김장수 의원 발의)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 · 김을동 · 김성수 · 노철래 · 박대해 · 김정권 · 정영희 · 이한성 · 정하균 · 심대평 의원 발의)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권선택 · 김창수 · 심대평 · 이명수 · 이상민 · 이재선 · 이용희 · 임영호 · 주승용 의원 발의)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임동규 · 신영수 · 정수성 · 김영선 · 박상돈 · 강명순 · 정해결 · 정갑윤 · 손범규 의원 발의)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이주영 · 김창수 · 심대평 · 이재선 · 권선택 · 안민석 · 김낙성 · 임영호 · 박상돈 · 이낙연 의원 발의)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손숙미 · 이정선 · 강성천 · 고승덕 · 신지호 · 배은희 · 여상규 · 나성린 · 강석호 · 윤석용 · 정미경 · 김금래 · 김소남 의원 발의)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김소남 · 손숙미 · 정미경 · 강명순 · 공성진 · 이균현 · 이애주 · 이종구 · 이정현 · 이화수 · 김옥이 · 이은재 · 조윤선 · 김금래 · 안홍준 · 이한성 · 권경석 · 황진하 · 정옥임 · 신상진 · 김성수 · 강승규 · 이병석 · 박영아 의원 발의)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김정권 · 손범규 · 이명수 · 이한성 · 임두성 · 김성수 · 김낙성 · 고승덕 · 신상진 의원 발의)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유기준 · 강성천 · 유성엽 · 황우여 · 한선교 · 강석호 · 정미경 · 박준선 · 이명수 · 김을동 · 박상은 의원 발의)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 · 김영록 · 신성범 · 김종률 · 조진래 · 이인제 · 송훈석 · 송광호 · 이

용삼·정병국 의원 발의)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최재성·조경태·이윤석·박병석·김유정·이미경·신낙균·김충조·오제세·최철국·김동철·최규식·이강래·안규백·김재균·원혜영·김부겸·강기정·장세환·노영민 의원 발의)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원유철·안효대·강길부·이윤석·김성조·최병국·신성범·이진복·김소남·김기현·최구식 의원 발의)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강성천·김성수·김성희·김세연·박대해·박민식·서상기·이종혁·이화수·정갑윤·조원진·황영철 의원 발의)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신학용·정영희·유기준·최영희·유성엽·손범규·이해봉·이인기·박은수·이한성 의원 발의)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조영택·최영희·송민순·김춘진·백원우·전현희·최재성·박은수·강창일 의원 발의)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신학용·김상희·양승조·박은수·김성순·강운태·우제창·백재현·김우남 의원 발의)
8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우제창·변재일·이광재·백재현·김희철·이명수·노영민·오제세·박상돈 의원 발의)
8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희철·이용삼·김재균·김동철·송영길·양승조·강창일·조영택·이미경·김우남·김종률 의원 발의)
8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최영희·김동철·강기정·변재일·안민석·이석현·문학진·김춘진·홍재형 의원 발의)
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김성태·신성범·김선동·권택기·박민식·정태근·주광덕·황영철·김성식·조전혁·이한성·현기환·서상기·김세연·이인기·윤석용·남경필 의원

발의)

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정태근·현경병·백성운·강승규·조문환·김영우·조진래·이화수·김재경 의원 발의)
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우제창·김희철·양정례·고승덕·김성태·정해걸·정하균·김소남·정양석·이종구·유성엽·신상진·이진삼·임두성·김재운 의원 발의)
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유기준·양정례·백성운·고승덕·송영선·김성태·강승규·이정선·김태환 의원 발의)
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발의)(김희철 의원 외 82인 발의)
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강석호·김광림·김태환·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경제·정해걸·정희수·조원진·최구식·현기환·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
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이용희·변웅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이진삼·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
9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정권·김성수·신지호·임해규·정해걸·이범래·김소남·이은재·김성조·이명규 의원 발의)
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원유철·백성운·이근현·임동규·현경병·최병국·진성호·김소남·이춘식 의원 발의)
9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양승조·김재균·강창일·김우남·김동철·이미경·최규식·이석현·김효석·최영희·김상희 의원 발의)
9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안민석·강창일·김종률·전혜숙·유성엽·김성곤·원혜영·이두아·최영희 의원 발의)

9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고승덕·김세연·김영진·김성태·김충환·김춘진·노철래·박진·박상은·박종희·여상규·이경재·이주영·이철우·유기준·장윤석·정미경·조전혁·황우여 의원 발의)

9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정태근·현경병·백성운·강승규·조문환·김영우·조진래·이화수·김재경 의원 발의)

9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이정희·홍희덕·권영길·강기갑·박선영·김춘진·신낙균·박은수·유성엽·조승수·최영희 의원 발의)

9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이달곤·정희수·주성영·고승덕·이주영·임해규·이한성·원희목·임두성 의원 발의)

10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윤석용·고승덕·김태원·정병국·정양식·김동성·신상진·남경필·이화수·황영철·장광근·이윤성·김효재 의원 발의)

10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종률·정하균·강기정·양승조·유선호·박기춘·이낙연·서종표·김희철·홍희덕·이윤석·황영철 의원 발의)

10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이인제·이재선·현기환·강창일·김세용·윤영·김성순·신영수·박상은 의원 발의)

10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양승조·유성엽·최규성·안상수·박기춘·이화수·안홍준·김재균·김희철·정갑윤·김충환·정하균·황우여·장세환·김성수·이명수 의원 발의)

10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김정권·임두성·김재윤·김성수·이한성·유성엽·안홍준·신

상진·박대해 의원 발의)

10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10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노철래·정영희·송영선·박기춘·강운태·손범규·송민순·김을동·정하균 의원 발의)

10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이한성·안상수·오제세·홍장표·임동규·주광덕·안효대·손범규·김소남·정미경·나경원·이성현·유재중·유성엽·박은수·진성호·이정현·김영우 의원 발의)

110.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청원(박준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1.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시종·최욱철·정해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충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서 심의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안건 전체를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0항까지 79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부터 제85항까지 5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98항까지의 13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9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6항까지 7건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7항부터 109항까지 3건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0항과 111항,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경석 의원께서 급박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안설명을 하고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경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의원 존경하는 김충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투명하게 모금하기 위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설명서 뒤에 붙어 있는 첨부자료의 통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또는 후원금 광고비용 등 각종 후원회 사무비용으로 평균 모금액의 약 18%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공제액까지 합하면 전체 후원금 모금액 중 약 71%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치자금 기여도는 평균 29%에 불과합니다.

또한 후계자 개인의 순수한 가용 자금 중에서 수십만 원이나 또는 수백만 원까지 기부한다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부득이 이익집단과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정치자금의 사적사용, 허위 영수증 기재, 법인·단체 등의 후원금 기부, 기부 한도액 초과 등 탈·불법 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인이나 모금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탈·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귀책사유 또한 후원금을 받는 정치인에게 귀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 기부 한도액의 2배를 기부 받을 수 있어서 당선 회수나 지역구 유무에 따라서 국회의원 개인간의 모금액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조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현행 제도는 정치계를 부정·비리 집단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정치 불신 풍조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이, 중앙부처의 장·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원받는 것에 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추진비만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과 편법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예외 사항으로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후원회를 통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모금이 아닌 정치활동추진비로써 선관위 기탁금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원회는 폐지하되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는 존속하도록 해서 선거기간 동안에 후원금 기부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간 500억 한도 내에서 법인 및 단체 기탁금을 허용하고, 기탁금을 재원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게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배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평상시 의정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정치활동비 조달로 정치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정치자금법 탈·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치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권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석 의원님께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의원 한나라당 강원 원주 출신 이계진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충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로 줄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직접 출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선거운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장의 인지도를 높여서 실질적인 사전 선거운동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특산물을 들고 서 있는 천편일률적이고 차별성 없는 광고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선거일 180일 전의 기타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선거일에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특산물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를 제한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동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소관 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지자체의 장이라고는 하나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재정으로 개인의 낫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굳이 지자체장이 광고에 출연하려고 한다면 다음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이를 허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자체의 홍보를 위한다면 비정치인인 예를 들면 탤런트 등 지역 출신 유명인을 통한 광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지역주민이나 특산물 생산자 중에서 모델을 찾는 것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시어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이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議員 존경하는 김충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의 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UNDP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토대로 살펴보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규정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나 여성 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 규정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동안 권고 규정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저조했던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관련 규정이 전혀 없던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추천을 위해 시도지사의 경우 10%, 자치구청장 및 시장의 경우 30%, 군수의 경우 10% 이상을 각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후보자 등록 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의 등록 경우까지 추천 비율과 순위를 준수하여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동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이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의, 두 분 내지 세 분의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고요, 제안설명을 하지 않게 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서갑원 의원께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 의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조 위원장님, 그리고 정개특위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 법의 개정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는 1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확대된 역할과 권한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토론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서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달근 장관께서 페루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환영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해서 직접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장관을 대신해서 강병규 행정안전부제2차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여기서……

○**위원장 김충조** 나오셔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뒷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행안부차관입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의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부재자 투표 방법을 부재자투표소 투표와 거소투표로 구분하고 통·리·반의 장 등에 대해서는 투표운동을 금지시키는 등 투표운동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에 투표 참여를 위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7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충조** 강병규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검토보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천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79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법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유형화해 보면,

첫째, 그동안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던 조항에 대한 개정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유형으로는 선진 선거제도 구현을 위한 선거구 조정과 후보자 추천제 및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 8개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사무 절차의 합리화와 관련된 조항도 심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시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5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시중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은 임기 중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당원협의회의 활성화 방안과 민주적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의 개선 방법에 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애인 공직 후보자와 여성 후보자 추천보조금 제도 도입과 국고보조금을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국고보조금을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 균등 배분토록 하는 내용과 현행 교섭단체 위주의 보조금 배분 방식의 변경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위탁선거의 선거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주광덕 의원 외 6인의 대표의원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은 2004년 7월 30일 시행 이후 제주도 행정구의 개편, 청원시·청원군 통합 투표 등 국가와 지역 현안을 처리하는 데 적용된 바 있으며 운영 결과 지자체, 시민단체, 선관위, 정부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상의 미비점

을 보완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점, 저조한 투표율 개선 문제, 과열, 불법 의혹 등 투표의 공정성 시비 등을 대상으로 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3건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수 의원안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용이와 정당이 지명한 연설회가 방송시설을 이용해 대담 또는 토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 방영 의무화 규정, 양정례 의원안은 투표율 저조 해소를 위해 투표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 이정선 의원안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문 개정된 이래로 공직선거법 등 유사법 체계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 108건의 법안 외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기초단체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으며 이들 내용은 법안 심의 시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충조 천병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체토론으로 들어갈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대체토론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양승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양승조 위원 양승조 위원입니다.

내년 6월 2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해서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동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법안에 들지 않고 아마도 교육위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선거도 갖고 그런 면에서 함께 다뤄야 될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님께서 교육과학위 위원장

남하고 상의하셔서 내년 동시선거에 관련된 법안은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가지고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조** 양승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계특위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우리 특위 회의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의 공동대표 조선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서 김미정 사무총장, 김순미 서울대표, 김선희 사무국장 등 지도부가 이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필요 시에 추가질의 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김기현 위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원희룡 위원도 안 계시고, 다 자리를 비우셨네요.

민주당의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민주당 박선숙입니다.

워낙에 많은 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시설에의 투표소 설치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요.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종교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된 현황이 한 23% 정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9%,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18%, 많이 낮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투표소로 활용되고 있는 종교시설 가운데 거의 90%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당이 한 9%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 종교와 친화적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주는 여건이 아닌가, 종교상의 이유로 타 종교시설의 출입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투표권에 대해서 일정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제출된 것처럼 종교시설의 투표소 설치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

안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수치상으로 현재 18%까지 내려와 있는 종교시설의 투표소 설치 비율을 한 1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거 일문일답으로 해야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순서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선 사무총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깐 인사말씀 해 주실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투표소 현황은 지금 자료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에 6.4%만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문제는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선관위에서 타 지역을 투표소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표소를 설치할 때는 단순히 그 하나의 요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투표소의 넓이라든지 다수 선거인들의 접근성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1층 투표소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100% 종교시설에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종교시설에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여건이다라는 것을 법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문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박은수 의원이 제안해 놓은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1층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법에서도 이미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같은 것들은 감안돼야 되는 것인데 굳이 법에서 이것을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도 하고 또 종교시설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 문제, 다른 시설들이 얼마나 찾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양정례 의원, 신낙균 의원,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양정례 의원은 24시간 하자는 것이고 신낙균 의원안은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8시까지 연장하자는 안인데요. 점차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투표율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오후 10시,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9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은 오후 8시, 이탈리아 오후 10시, 타국의 사례에 비추어서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투표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시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그에 연달아 실시되는 개표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증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일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투표가 가능하신 분들은 투표할 것으로 보고 다만 재보궐 선거는 정상 출근일이기 때문에 8시까지 연장돼 있는 점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숙 위원 그런데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분들만 전체로 한 것이어서 그 발언은 사실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개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심야의 전기사용료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비용이 추가로 어떤 부담이 올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소위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확대에 관한 최인기 의원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지자체 지원금이나 보조금 받는 단체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대부

분의 단체가 공익활동 성과를 인정받아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선거운동 금지 자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서 현행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정도의 규제가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선거일 5년 전부터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금액이라든지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활동 내용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충조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게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위원들이 질의에 참여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제한된 시간을 넘길 경우 추가로는 1분이 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구상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이 위원회가 정치개혁특위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이 발언시간에 구애를 받기 보다는 위원장께서 탄력적으로, 물론 위원들께서 7분을 지키시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발언도 있고 그러니까 꼭 위원회에 지정돼 있는 7분을 독려하지 마시고 저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이 드린 말씀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나라당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울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선관위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의원들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 또 나아가서 당원 가입을 금지하자는 이런 개정안까지 나와 있는데 선관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과 유지하지 않는 것의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관리기관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당원 가입 금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의견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에 위반된다, 헌법 위반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무총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 부분도 역시 기초 장이나 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전제로 한 법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기현 위원** 지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되면 기초의원의 경우에 비례대표를 사실상 도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아무래도 비례대표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현 위원** 당원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구당을 부활하느냐 아니면 당원협의회의 역할이나 권능을 좀더 확대하자는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사무실을 설치하자거나 유급직원을 허용하자거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지구당이 없어지고 시도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정당에 대한 국민의 어떤 활동이 상당히 위축받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협의회를 좀 보장하자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원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사무실을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과거의 어떤 지구당같이 지구당화되는 그런 폐해는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지금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관해서는 선관위 소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기현 위원** 교육부 소관으로 돼 있지요? 교

육부 소관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의 절차나 이런 내용들은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그대로 다 준용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공선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양쪽 절차가 서로 간에 모순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포함돼 있지요? 후원회를 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당장 시작해서 선거운동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일부 모순되는 점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선거에서 공선법을 준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개정안을 만들면서……

○**김기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날, 교육감 선거나 선거가 똑같은 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김기현 위원** 그렇게 되는데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간에 상치되거나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는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후보자 입장에서도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앙선거 위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의견만 개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하고의 사이에서 무슨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예 이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소관으로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선관위 소관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 왔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모순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 따로 그냥, 내 것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할

일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협의해서 할 일이 아니고 통일하기 위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님께서 30% 의무할당하자 이런 주장도 하셨습니다만…… 아까 10%였나요, 의무할당제로 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여성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중앙선거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여성선거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어느 지역을 여성선거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여성선거구로 지정된 선거 구민들의 어떤 선택의 제한, 그 지역 남성 출마 예상자들의 역차별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하시는데 외국의 사례에서 여성선거구제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없습니다.

○**김기현 위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가 아니고 선관위에 대한 기탁금을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허용하자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정치자금법은 정치적인 투명성도 보장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적정한 공급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법 개정 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중지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 수입원을 제한시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법인단체도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선관위에 기탁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 측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

다. 그것이 정경유착이라든가 어떤 부정적인 문제는 개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기탁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조금 전에 권경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개별 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고 기탁금을 재원으로 해서 배분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는데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후원회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반 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통로는 후원회밖에 없습니다. 후원회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폐지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자칫 어떤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불러올 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후원금 제도를 없애고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음성적인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이 교과서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관계 이런 것을 볼 때 자기가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김기현 위원** 지정기탁제의 운영 방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정기탁금은 지금 정당에 50%까지 지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돼 있지 정치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지정기탁제로 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주당의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

습니다.

○양승조 위원 양승조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아마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이 두 가지 점과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여러 개 나온 것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면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조 위원 아니,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연결이 돼야 되겠지요.

○양승조 위원 그러면 비례대표를 폐지했을 때 여성 의원님들의 지방 진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비례대표의 경우에 50% 이상을 할당하도록 돼 있고 홀수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비례대표제를 없앤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장애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승조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양승조 위원 여성전용구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남성분들의 평등권 문제 그런 것도 따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양승조 위원 또 만약 정당공천제를 폐지했을 때 사실 정당의 간부 역할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경력 사항에 전부 다 표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천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우려도 예상할 수 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과거에 보면 정당공천제 안 했을 경우도 정당 경력은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내천 관계

는 글썽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승조 위원 그런데 정당공천제를 폐지했을 때 문제점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책임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또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미약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데 단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단체장 견제는 정당 소속이 돼 있다고 해서 단체장 견제가 되고 정당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단체장 견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소임이기 때문에 정당 공천하고는 무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사무총장님이 지역 현실을 더 파악하시면 아마 답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소선거구제 채택 시 그런 우려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지역 구도의 정치가 현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역 구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특정 정당의 독식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수당 위주의 어떤 양당제 성립으로 소수당 출현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입니다.

○양승조 위원 중대선거구 유지할 때는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기초의회 지방자치가 생활정치인데 생활정치 구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례대표를 중대선거구를 유지하더라도 의원들 한 네 분 정도 뽑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나누어서 그분들이 어떤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도 하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승조 위원 지금 지방선거에서 시장·광역시장·도지사 후보에게만 후원회 허용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그런데 시장·도지사도 예비 후보한테는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양승조 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는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실질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는 한 110만 정도가 되는데 법정 선거비 굉장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승조 위원 그렇다고 볼 때 평소 자기 재력이 충분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되지만 역량 있고 깨끗한 사람이지만 재력이 미약한 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장 후보라든지 아니면 광역의원도 비례대표에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후원회를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법안도 제출돼 있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재력이 약하신 분들의 정계 진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후원회가 필요하다고도 봅니다마는 후보자가 워낙 많은데 그분들이 다 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게 되면 우선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도 많이 갈 것이고 그것이 정치자금 모금에 따른 어떤 세수 결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양승조 위원 아니, 기초단체장은 실제로 230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의원선거보다 적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여하튼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후원회가 너무 많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것이다 하는 문제는 예상됩니다.

○양승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 같은 경우도 후보가 후원회가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없습니다.

○양승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시·도지사 후원회가 있는데, 교육감이나 시·도지사나 선거비용이 거의 같이 들 텐데……

○양승조 위원 사리에 맞지 않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를 유지할 때 정당 표기 다음에 가, 나, 다, 라 성씨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양승조 위원 이것 아주 불합리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정의 경우에 당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추천하는 순위에 의하든지 아니면 후보자 간의 추천에 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지금 법안도 제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ㄱ’ 씨 성이 절대 유리하고 ‘ㄷ’ 씨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또 교육감·교육위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이것을 만약에 1, 2, 3으로 한다면 정당 후보자하고 오인할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럴 우려가……

○양승조 위원 아주 큼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물론 이거는 교육위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가, 나, 다, 라로 하고 결국에는 추첨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의견에 같이 하고요. 저희는 지금 교육감 선거와 다른 선거를 같이 할 때 혹시 교육감 후보가 정당 공천으로 오해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위원 동시 선거는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양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잘 파악하기 힘든데 아까 설명 가운데 ‘통·리·반장 등에 대해서는 투표운동 금지시키는 등 투표운동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주민투표와 관련된 투표운동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주민투표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공직자 선거가 아니고요.

○이경재 위원 이것은 관권의 개입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현재 모든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통·리·반장 건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못 하도록 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가령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이것은 당원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입당원서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경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경선에 있어서의 구조도 뒤엎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사실 주민투표는 공직선거하고 달라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정당과 관련된 그러한 행위가 게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재 위원 이것 정신은 같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재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경재 위원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는데 지금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천을 배제하자는 운동이 많으면서, 그것은 현재의 위치 가지고도 재선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본다구요. 그런데 현재 공천제가 시작되면 아마도 경선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6개월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당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경선에 대비한 건데 이것은 나아가서는 바로 다음 자기 선거의 서명운동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입당원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입당원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어떤 자율적 의사에 반해서 반강제적으로 입당원서를 받는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산하의 이장 등 여기에 금지한 이장·통·리·반장이랄지 이런 관련된 조직을 통해서 죽 모금하고 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들도 문제지만 여기 이 사람들도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강제로 했을 경우에는 명백히 법 위반이겠습니까마는 자율적으로 내는 것을 단순히 받아서 준다 했을 경우에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자체도 결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재 위원 아니, 지금 바람직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위법성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전달해 줘서 가는 게 아니고 이장이 돌아다니면서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적인 것이냐, 자율적인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경우는 없고요. 돌아다니면서 받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갖다 주는 것 이것은 강제적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

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사례가 아니라 법적인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배제하자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 2003년 1월 30일 헌재에서 위헌 판결한 결과에 따라서 정당공천자 됐다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총장님?

과거에는 정당공천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천을 받는 것에 대한 위헌심사를 요청한 결과 정당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로 된 것은 이미 2003년 1월 30일날 헌재에서 됐는데 그것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여기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경재 위원**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공천제도인데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민이 6개월 이상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 한하여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지역,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 돼야만 선거권을 부여하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형식상 주민등록만 할 수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같다는 그러한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의 경우에는 명부작성 기준이 현재 주민등록이 있으면 바로 등록이 가능한데 재외국민의 경우에 어떤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말씀하신 대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미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초의원에 소선거구제냐, 현재대로 중대선거구제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또 비례대표제까지 폐지하자는 얘기 있는데 비례대표를 폐지하면 좌우간 여성의 진출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여성을 위해서는 이것 공천제가 필요하고, 특히 소선거구제는 다른 것은 전부 소선거구제로 하면서 이것만 지금 중선거구제이거든요. 이것은 좀 불균형 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달곤 장관께서 오전 일정을 소화하시고 지금 여기 특위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04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여타의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장관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권영길 위원** 행안부장관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장관님 상대로 좀 확인할 게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 문제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권영길 위원** 며칠 전에 발표된, 큰 지역으로 6개 지역이지요.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진해 진주 산청 또 남양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완료 시점이 언제이지요?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정부의 계획상으로는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12월말이나 1월 중순 정도 되면 정부 절차는 거치겠는데요. 지금 발표된 의견조사는 참고용입니다. 특히 진주·산청지역 그리고 의왕·안양·군포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변경을, 자치단체 소속이 달라지는 변경을 주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이번 통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물론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했기 때문에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남은 지역이 네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조사를 참고해서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장이 저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저희가 회부를 하면 주민투표로 가거나 그 두 가지 길이 남았는데, 주민투표로 가는 경우는 절차가 한 달여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12월에 되게 되면 1월 중순 정도 되면 결론이 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선거구제와 관계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장관께서는 진주·산청 또 남양주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의왕지역……

○**권영길 위원** 이번에 제외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처음에 할 때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했구요. 현재 국회에서도 그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선거구 확정권한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두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진주·산청지역과 의왕·군포·안양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선거구 문제는 국회에서 다루어서 결정을 해야겠습니까마는,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면서 선거구제와는 전혀 연계를…… 지금 현재 신청한 것까지는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번 자율통합에서는 그런 의도나 내용의 정책이 없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합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통합되는 지역에서 인구 조정 문제라든지 자체적으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질 때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희들로서는 지금 통합되는 지역은 당분간은 그 지역의 행정 단위를 어느 정도 존중해 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더라도 그 지역을 독립된 하나의 행정구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율통합 하는 것은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토론 과정에서 정부 측에 더 확인을 해야겠습니까마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특정 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산·창원·진해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국회의원선거구에 관한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상정하면서 이번에 통합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주·산청의 경우 또 다른 지역 의왕하고 과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군포·안양.

○**권영길 위원** 군포·안양 그쪽은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당연히 따르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것은 행정안전위원회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 보고를 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통합은 많은 지자체를 통합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방에서 그동안 통합이 오랫동안 논의된 지역 그리고 통합을 하면 시너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종의 모델을 만드는 그런 전초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국회의원선거구가 개입이 되면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적인 조치를 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봐서,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선거구까지 하기에 아마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권영길 위원** 어쨌든 선거구제 문제가 있고 시간상 급박한 관계로 진주·산청 또 의왕·군포·안양을 제외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많이 갔는데, 됐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 정부에서 안을 내셨는데 주민투표 유효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무슨 말이나 하면 실제적으로 단체장을 소환한다고 하면 선출할 때의 규정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에서 유효가 얼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데 실제 선출을 할 경우에는 그것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투표율이 극단적으로 5%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과반수가 되면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환할 때는 3분의 1이거든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투표 참여율 3분의 1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분의 1 이하로 해 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여러 가지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주는 비중보다는 주민투표가 주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할 때 사실상 3분의 1의 주민이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고요.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단체장 소환의 경우에도 3분의 1 투표 참여 요건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해서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위원장님 법안도 질의해도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충조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초의원 정당추천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03년도에 내린 판결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유기준 위원 ‘기초의원선거에서만 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기초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의원을 선출할 때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면 헌법재판소 판시와 마찬가지로 위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헌 판계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기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무총장의 견해가 없으세요?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정당 공천 여부는……

○유기준 위원 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느냐 하면 광역의원이 있고 또 국회의원이 있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있는데 유독 기초의원만 이렇게 정당 표방 금지를 하게 되면 또 정당 공천을 배제하게 되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만 유독 이렇게 해야 되

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해를 밝히기 곤란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 판결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 권경석 의원안에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하며 선관위에서는 그 기탁금을 활용하여 50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정치활동추진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분할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유사한 입법례가 외국에도 있나요? 전체 국회의원을 동일한 카테고리로 묶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치활동추진비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되고, 해당 의원이 됐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만일에 균등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단체주의적인 배분 방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형태인데 그 자체를 막는 결과도 가져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정치인에게 돈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정상적인·합법적인 통로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활발한 경쟁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국민에게 선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지자를 많이 확보하고 그 지지자들이 좋은 정치를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게 정치후원금의 기본 취지인데 그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 되면, 물론 너무나 지나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하는데, 현행은 우선적으로 균등해서 배분을 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100분의 2를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어느 정당에 주었고 그 정당은 그것에 의해서 국회 내에서 의석 비율에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위적인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이 표현한 투표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보조금 배분 방법은 국가마다 그 나라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기준 위원 우리나라 현행 방식과 유사한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다른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주로 의석수, 득표 비율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대부분 의석수, 득표수에 따라서 한다,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다른 나라의 예가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50배 과태료 부과제도,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투표를 할 때 일정 금액이나 금품을 받은 경우에 50배의 과태료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 부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필요한 입법 목적

을 달성할 때 해당 기관에 어느 정도 재량을 주어야 되는데 그 재량을 처음부터 주지 않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선관위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접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에서 위헌 결정이 됐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미 올해 3월 26일 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50배 이하 정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재량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의견을 냈는데요. 1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정황을 참작해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는 5000만 원이 최고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유기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성 위원 사무총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기선입니다.

○최재성 위원 오늘 출석하신 분들 명단이 없어서 여쭙 보았습니다.

여성할당제 30%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신데, 지금 정당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15%를 줬는데 여성이 이겼는데 패배한 남성 후보가 불복할 수 있습니까, 불복할 수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

○최재성 위원 패배한 남성 후보가 출마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경선은 순수한 경선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른 어떤 요소가 개입된다고 하면 이것은 공선법에서 얘기하는 경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낙선해도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경선은 공정한 경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공선법에서 얘기하는 당내 경선으로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불복해서 출마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없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것은 해석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해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법이 그런 할당제라든가 전용선거구제라든가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역사적 조건 때문에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실 정치적 자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선인데 경선에서 사회역사적인 부족함, 하여튼 상대적인 경쟁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가산점이라는 제도로 상쇄시키면서 여성의 자립적 정치 진출을 도모시키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전용선거구제나 할당제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복해서 출마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그런 자립적 정치 진출의 루트를 봉쇄하고 타의적·인위적 방식으로 전용선거구제나 할당제를 해서 그 속에서 사실상 경쟁력을 스스로 함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늦춰지거나 배제 당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을 조금 더 하시고 경선에서의 여성 인센티브제도가 사실상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른 나라 사례나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함께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정치자금에 있어서, 사실 정치자금제도를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극심한 정치 불신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권경석 의원님이 발의했습니다만, 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시비는 논외로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업무와 관련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숙박이라든지 출장이라든가 정책 토론이라든가 이런 공무적 성격의, 명확하고 또 직접적인 규정을 받을 수 있는 형태들은 사실 기탁금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국회의원의 아주 보편적인 공무와 활동에 대한 것을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출한다, 국회의원의 보편적 공무도 차별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어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 의원들이 갔는데 여기에 차별성이 있나요, 능력의 차별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후원금은 그야말로 개인의 정치활동이라든가 지역활동이라든가, 물론 해석에 따라서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의 보편적 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모금될 수…… 차등적으로 모금될 수밖에 없는 정치자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본원리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

○**최재성 위원** 시간이 다 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죄송합니다.

○**최재성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것은 일단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보편적 업무에 차등적 후원금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역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위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최재성 위원**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최재성 위원 선거 당해 시기 말고 당선된 이후에, 임기 중에…… 예를 들어서 당해 지역에 선물을 돌리거나 이래서 적발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맞습니다. 언제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때부터 당선무효가 됩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 직을 상실합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당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에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선물을 돌리다가 적발되었다, 선거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아까 당선무효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선무효가 아니고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의원직 상실입니다.

○최재성 위원 피선거권 상실로 인해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최재성 위원 당선무효는 아니…… 당선무효는 그렇지요. 당선 이전에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지, 이후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1분 더 하시지 그래요? 최 위원님, 1분 더 하시지 그러세요?

○최재성 위원 아, 위원장님의 간청에 의해서 1분 더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최재성 위원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알권리에 해당합니까? 선거시기의 후보지지율조사라든가 이런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결과 공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국민들의 후보선택기준에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후보들의 자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렇지요? 이런 것이 판단기준이 되어야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이 판단기준이겠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냐는 것이지요. 여론조사가 후보 결정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상적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언론의 필요성이나 국민들의 단순한 호기심, 이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정견이나 철학, 공약 이런 것을 보고 후보자들을 선택해야지요. 물론 조금 더 부정적인 요소를 열거하자면 학맥, 인맥, 개인적 관계 이런 것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누구는 몇 %고, 누구는 몇 %인데 불쌍하다고 해서 찍어주고, 당선되겠구나 해서 찍어주고 이것을 정상적인 판단기준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관련된 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언더독(underdog) 현상이나 밴드 웨건(Band-wagon)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이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혹은…… 공직자 사퇴시한 이런 것들이 선거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되는 것도 비정상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이론이 있다고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이것은 비정상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최소한 법정선거운동 개시일 전이라고 보고요. 또는 공직후보자 사퇴시한처럼 상당 정도 이전에 해야 되고 아니면 순전히 내부의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용도로 하는 것이 정

상이지요. 다만 언론이 보도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나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시기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대로 후보자 선택의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정책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그것이 중립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상당기간 전부터 금지시킨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지지율을 알고자 하는 것이 무슨…… 하여튼 지금 규정은 너무 그런 가변성을, 여론조사에 의한 가변성을 확장시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밴드 웨건 효과나, 사실 밴드 웨건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제동을 걸 수 없는 시기적 규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정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그 이전이라도 합리적인 시기들을 연구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1분 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나라당의 이범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 위원** 서울 구로갑의 이범래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제도를 만들거나 또는 개정하거나 할 때 선출직으로 나오는 후보자의 관점 또는 후보자 편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선거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양자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래 위원** 양자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범래 위원** 두 번째, 선거, 투표에 있어서 요즘의 경향이 정당투표 형태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물투표 형태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아무래도 정당투표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범래 위원** 정당투표 경향이 더 강하다고…… 통계치나 이런 것이 선관위에 나와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없습니다마는……

○**이범래 위원**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04년부터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에 도입되어서 2006년 지방선거에 실질적으로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 18대 선거에도 해 봤는데 문제는 원래 취지가 정치신인들을 알릴 기회를 더 주고 또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예비후보자제도를 둔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상가 방문 이외에 호별 방문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가만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비후보자가 난립해 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치러보면 상가 입장에서는 우선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불만까지 합니다. 예비후보자라는 사람들이 온 숫자가 손님 숫자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 다 나올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혼란만 시키고 또 지역에 불편만 끼치나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정당투표의 경향으로 흘러서 정당후보자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선거제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과연 이 예비후보자가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비후보자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군데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만 첨부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예비후보자가 무려 152명이나 등록하는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탁금, 법정기탁금의 20%를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 내도록 하는 법안을 냈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시 선거권자 일정 수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서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저희 특위에서 물론 결정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6월 2일에 선거할 때는 정말 끔찍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범래 위원** 이 예비후보자가 내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지역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범래 위원** 두 번째, 지금 기초의원의 경우에 정당공천 배제하고 중선거구제를 갖다가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선거구제로 바꾸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에서 보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한테 민원제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형태,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중선거구제가 국회의원선거제도에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선관위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선거구제를 별도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선거구제는 각자 정치적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이범래 위원** 특별하게 연구하신 바는 없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범래 위원** 혹시 선관위에도 각 지역선관위에 민원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구제를 뒤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런 제도에 대한 불평은 없고 선거기간 중의 불편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는 있습니다마는 제도에 대한 민원제기는 없습니다.

○**이범래 위원** 세 번째는 정치후원금 문제입니

다.

지금 채택된 제도는 보통 소액다수, 그것도 사실은 지역의 그 후보 또는 그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소액다수가 후원금을 줘서 자기의 지지성향도 표시하고 또 그 사람의 의정활동을 더 활발하게 한다는 취지로 했는데 실제로 이 10만 원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세금혜택 보는 것은 근로소득자들밖에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범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실은 거의 소액다수는 걷는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선관위에서도 그 통계를 냈을 텐데 결국은 누가 소액다수를 내느냐 하면 국회와 관련된 기관, 회사 이런 데서 다 내고 있습니다.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범래 위원** 그것이 과연 자기의 정치적인…… 정치 선호가 되는 그런 의원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낸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단체나 회사나 조직이 결국은 그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넣으려고 그 후원금을 넣은 것이라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유관부서 의원님들한테 낸다고 한다면 어떤 순수정보다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범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증을 위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런 것을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이범래 위원** 이것이 과연…… 권경석 위원님이 안을 내신 것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후원금제도가 제대로 간다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지원받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의정활동도 지역에서 후원금주는 것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일 텐데 그것이 정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 존속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 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제도 도입하는 것과 별개로 후원회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범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이범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은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위원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용경입니다.

지금 권경석 의원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마 연관된 질문이네요.

사무총장님,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판도에 정치자금이 필요한 게 얼마가 걸려야 된다고 보sey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글썽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산을 안 해 봐서……

○이용경 위원 추산을 안 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용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도 통계가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회의원 후원금이 634억, 선관위에 기탁된 것이 약 76억, 당비가 한 390억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이 있고요.

○이용경 위원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정도, 100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용경 위원 예, 1100억 정도. 그런데 후원금 참여자는 얼마나 됩니까? 개인, 숫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난해 33만 6000명이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용경 위원 33만 6000명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용경 위원 그리고 지금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은 종합소득세는 해당이 안 되지요? 근로소득세만 해당이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소득세 면제를 해 줍니다.

○이용경 위원 종합소득세도 해당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용경 위원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에서 10만 원을 내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용경 위원 그러니까 종합소득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용경 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정치자금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부담 없이 정치활동을 하고, 따라서 부패도 줄이고 이러한 의도로 이런 발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34만 명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세금 내는 사람 중에 몇 명이, 몇 %가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까? 세금 몇 명이 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1000 몇백 만……

○이용경 위원 1000 몇백 만 중에 지금 34만 명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세액 공제를 해 주고 ‘후원금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하더라도,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데 그걸 하더라도 한 3%만 지금 참여를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국의 제도는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이용경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세액에 대한 변동이 없이 세금이 만약에 100불이라면 ‘당신이 여기에다 체크를 하면 1%가 자동적으로 정치기금으로 나갑니다. 당신의 세금은 절대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신고할 때 그냥 체크 하나만 하면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도화하려면 아마 세법도 같이 세법 관리하는 기관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런 것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편의를 제고하기 때문에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렇지요? 아니면 이거 따로 어디다가 온라인으로 보내든지 송금을 하든지 이런 별 절차 없이 세금 낼 때 그냥 체크를 함으로써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야 되는 정치자금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움직이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혹은 이러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얼마를 더 걷을 수 있나 이런 분석은 또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이것을 보완한다든지, 권경석 의원님 안입시다마는 그러한 것을 좀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이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委員 한나라당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총장님께, 지금 재보궐 선거가 1년에 두 번씩 있어서 사실은 이 재보궐 선거가 어떻게 보면 막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 예를 들면 미국 같은데는 재보궐 선거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또는 재보궐 선거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놓은 거 있으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재보궐 선거가 1년에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어떤 정치적인 대립, 혼란 이런 부분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궐 선거를 전혀 안 하면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로 축소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시다마는 저희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여성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여성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여성들끼리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당에서든지 간에 여성이 1명밖에 당선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성의 정치 참여 진출을 좀 방해하는, 아무튼 지장이 되는 그런 것이 초래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래서 여성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평등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후원금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이 계시는데, 사실 후원금이라는 게 자기가 지

지하는 의원을 위해서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후원금제도의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초선 의원이라든지 또는 비례대표 의원 이런 경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후원금이 제대로 잘 안 들어온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만 원씩 받는 것은 결국은 얼마씩 세금으로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런데 그게 결국은 누구 돈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국가 재정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치인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후원금을 가지고 이게 정치자금이나 또는 후원금이나, 이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도 일으키고 이런 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는 관공비 성격을 갖는 그런 것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권경석 의원이 내놓은 안처럼 근본적으로 이것은 제도가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개 정치인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후원금이 정말 단순한 후원금이나, 어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후원금이나 그거 가지고 굉장한 물의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돌려주고 이래서 후원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선거위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연구해서 가지고 이게 차후에 좀 나은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진행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어떠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후원회제도의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후원금제도 나름대로도 장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후원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권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신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기탁금 같은 것을 모아서 의원님들한테 나눠 주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금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후원금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중앙선관위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일부는 의원들한테 나눠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지금 권경석 의원이 제안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李恩宰 委員**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내놓으셨는데, 지방의회나 또는 이러한 여성의 30% 공천 할당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몇몇, 일부 계셨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李恩宰 委員** 사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위헌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50% 할당하는 것도 이미 문제가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공천 할당 30%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헌적인 성격은 아닌데 일부 여성들의 어떤 정치 참여, 정치 진출에 대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대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요, 이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거소투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의원께서 내신 것이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것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현 제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관에 나와서 직접 투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그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투표 같은 것은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치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우편투표의 경우도 지금 국내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산간 오지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투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거소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재외국민 모든 분들에게 우편투표를 하게 한다면 국내에 계신 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恩宰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다음에 한 분 질의만 더 갖도록 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석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에 당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을 처하는 게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형에 처하도록 지금 우리 현행법에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우리 18대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물러나실 때 항상 편지를 1장씩 보내시는데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입법례를 좀 봤어요. 입법례도 마찬가지로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선거법에 위반돼서 조사받아 재판에 회부되는 적이 있는데 지금 2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단 1건도 사법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법부가, 간접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부가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다 해서 한 번도 선고한 적이 없고, 제가 먼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도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양형의 기준을 거의 실행 이상을 받는 경우만 당선 무효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처벌하는 경우가 없는데, 물론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엄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이런 측면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전을 받았든가 상대방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규정에 의해서 당선무효형을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 당원집회를 했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벌금 100만 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니까 정말 너무 쉽게,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서 된 공직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너무 쉽게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조사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글썬요,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너무 빈번히 일어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각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부정부패,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죄적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저도 금전적으로 공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당선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한다든가, 낙선 목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당선되고 상대방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범죄는 좀 강한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오히려 경미한 규정들은 해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유형별로 좀 다양화시켜서, 양태에 따라 나누거나 그럴 필요성 혹시 못 느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저희가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어떻고 또 이행 실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이춘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전 분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서 한나라당의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당면한 지방선거에 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겠습니까만 또 확인할 것이 좀 있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시군 통합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시 설치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야 통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돼야, 통합시로 선거를 하느냐 아니면 현재 갈라진 시로 선거를 할 거냐 하는 기준을 언제까지 정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것은 지금 이법례 의원께서……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자율 통합을 지원하는 일반법 성격의 법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이 문제를 관장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면서 특위에서는 통합설치법을 개별 지역별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후자를 택하게 되면 2월 말 정도만 돼도 큰 무리는, 작업상의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정진섭 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이 총장님, 그러니까 선거관리위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게 돼야 통합시로 선거를 한다, 아니면 그걸로 한다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거를 주관하셔야 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는 게 1월 23일인데요, 적어도 그전에는 돼야 선거비용 공고를 하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정진섭 위원** 글썬, 지금 단체장들의 경우에 120일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진행 중에 있을 때 120일 전에 등록하는 후

보자가 통합시 시장이라고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합되기 전 시의 시장으로 나간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낳기 때문에 기준 일자를 총장이 명확하게 끊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현행법상으로는 1월 23일까지 돼야……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1월 23일까지 통합이 안 되면 갈라진 시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현행법상은……

○정진섭 위원 지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제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120일을 역산해서 볼 때는 2월 말까지만 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진섭 위원 이 120일이라는 게 예비후보자 등록일이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장관님하고 총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정확한 기준 일자를 정해서 사전에 공고를 하세요. 알려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선거를 지역에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죽 단계별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단체장들은 120일인데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간을 얼마 줍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60일입니다.

○정진섭 위원 60일 주지요? 그런데 60일 동안에…… 너무 길지 않습니까? 무슨 한 동네를 다니는데 60일씩이나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선관위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선관위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걸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정당 기호를 예비후보자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컨대 한나라당이면 1번, 예비후보자의 명함도 다 기호1, 민주당은 다 2, 이렇게 써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무슨 1번이 7명이나 되고 2번이 5명이나 되냐,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후보자는 정당 기호를 쓰지 않게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글썄요……

○정진섭 위원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예요. 이것 선관위 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이것 규칙이니까 선관위가 하셔야 될 일인데,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비후보자 과정에서 제일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를 빙자한 전화 공세인데 이것을 규제하는 어떤 규칙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사실상 선거 운동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할 때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는 제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걸 듣고 하나 느낌이 와서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이로 인해서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은 현재 공선법에 여론조사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위헌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헌·위헌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신 일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없습니다.

○정진섭 위원 없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

으면 굉장히 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문란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선거구제도로 그대로 가게 될 경우에, 기초의원의 경우에 기호 부여 방법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것 뭐 조상 잘 두면 당선되고,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추첨으로 한다든지요, 아니면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순위로 기호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뭐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편투표, 거소투표라고 하나요? 하여튼 부재자 신고를 받아서 우편투표를 하는 일을 요건의 제한이 없이 상당히 폭넓게 받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법에 의한 사항입니까, 규칙의 사항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법에 거소투표 할 수 있는 사람이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런데 과거보다, 과거에는 원격지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웬만한 사람은 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소투표나 우편투표를 신청하면 대개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각 후보들이 이 투표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이래 가지고요, 특히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이 작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많이 확보하면 이긴다, 이런 싸움이 붙을 수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 부분은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부재자투표하고 거소투표는 다릅니다. 거소투표는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진섭 위원 글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동그라미 쳐서 우편으로 해 가지고 보내는 것, 그것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돌 정도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규칙의 사항

이나, 법의 사항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법에 있습니까?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까.

교육감선거하고 동시선거를 저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정진섭 위원 그런데 정당이 하는 선거와 정당이 하지 않는 선거는 원래 분류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한 연설회원 교육감에 대한 어떤 지지연설회도 하고 또 도지사 에 대한 지지연설회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분류해 내실 방법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제한을 못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섭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정진섭 위원 결국 정당선거하고 혼용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선관위가 차라리 이것을 러닝메이트제라든가 아니면 정당선거와 연계하는 방안으로 아예 의견을 하나 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제적 관리가 안 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관리기관에서 의견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 주민투표의 경우에 33%, 3분의 1이 돼야지 유효한 주민투표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정진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소환제 등에서 봤을 때, 뭐 투표하지 말자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3분의 1이 안 돼서 그냥 개봉도 못 하는 경우가 꽤 있었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정진섭 위원 그것이 어떤 선거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보통 3분의 1이 안 되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희들이 교육감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국민이 일반 제너럴 일렉션(General Election), 종합선거, 뭐라고 하

지요? 일제선거 외에는 관심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현안을 가지고 할 때는 지역이 가 보면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직의 여러 가지 방해,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동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조직에서는 방해를 하기도 하고, 또 체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전부 다 안면으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투표소에 나간다는 행위 자체가 자기 의사가 일부 노출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불리 이야기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세 차례 있었는데 몇 차례 더 해 보고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정진섭 위원 이번 통합의 경우에, 만약에 주민투표에 부의되는 경우에 이 3분의 1을 그렇게 넘게 하실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희들은 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을 극히 삼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합 문제를 가지고 투표로 갔을 때 3분의 1의 참여를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한 지역이 투표를 하는 데는 약 20억~50억 정도의 비용이 들고 투표를 상징하는 기간이 한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법적으로는 두 종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투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무겁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꾸 또 주민투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인이 재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참석이 있으면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최구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으로 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주장보다는 사실을, 말보다는 일을, 약속보다는 실적을 믿습니다. 현대사가 성공이냐 실패냐, 역대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이른바 전문가라는 분들의 심오한 학설이나 현란한 주장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출발 당시는 물론이고 70년대 초반까지 우리보다 앞섰던 북한의 오늘과 우리의 오늘을 비교하면 자명해집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출발할 때는 우리보다 앞섰던 아프리카 나라들이 지금도 그대로인데 우리나라는 참 대단하다고 틈만 나면 칭찬한다고 하던데 아프리카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남북이 다른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국회를 듭니다. 제대로 된 국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남북을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나라들하고는 달리 남북은 다른 조건은 거의 다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오늘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믿습니다. 김영삼·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김충조 위원장님 같은 아주 탁월한 의회 정치인들 덕분에 민주화가 됐고 그 기반 위에서 산업화에도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제도적으로 권력을 견제하기 때문에 다른 자유도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중·동 혹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각자 성향에 따라서 이처럼 강력하게 권력을 비판하는 것도 국회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언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스럽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국회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것은 웬만큼 흔들려도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받는 비판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민주화란 국민이 주인인 체제이고 민주화가 완성된다는 것은 국민이 주인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는 감수하는 수밖에 없고 주인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정치 관련 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거의 범죄자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들어 갑자기 나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몰려와서 그렇습니까? 저는 95년에 정치부 기자로 국회 출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국회를 관찰하는데 좋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도 그렇고 박선숙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정치관계법 때문입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도저히 지키기 힘든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걸면 다 걸립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을 만들어 놓고 문에 닿으면 죄라고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 적용도 점점 가혹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에 피의자·피고인·전과자가 득실 득실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이 지역구에서 245명입니다. 103명이 입건됐습니다. 거의 다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6명, 회계 책임자 19명이 입건됐습니다. 그중 당선자 34명이 기소됐고 10여 명이 지금 현재 당선무효가 됐고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올해만 10건의 재·보선이 있었고 내년에 또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위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달리 말하면 부패라는 얘기입니다.

김정권 의원은 제가 아는 가장 청렴한 의원인데 부패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 끝나고 검찰에 불려가 11시간 조사

받고 기소돼서 3심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선거 전날 방송 연설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딱 한마디 한 것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도의원 출신인데 도의원 6년 하면서 조례 만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권자에게 알려야 될 정보라 싶어서 말했는데 그분이 선거 끝나고 고소를 했습니다.

의원이 법안 발의하려면 의원 10명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찍어 달라고 하면 대개 찍어 줍니다. 법안 발의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을 말하지 도장 찍어 준 것을 발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도 그렇게 알고 언론도 그렇게 알고 시민단체도 그렇게 알고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도장 찍어 준 것이 5건 있다면서 도장 찍은 것이 공동발의니까 발의한 게 없다는 말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허위 사실은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입니다. 벌금 500만 원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선무효란 선거에서는 극형에 해당됩니다. 그 조항은 걸리면 바로 극형입니다.

저는 그 연설에서 ‘발의’라는 말을 한 번 쓰기는 했지만 그 말 앞뒤로 ‘법을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를 포함해서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당했고 1심에서 무죄 나자 항소해서 2심에서 무죄 나자 다시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상대 후보가 본인 입으로 조례 만든 것이 없다고 직접 말했는데도 항소하고 상고했습니다.

무죄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들을 때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죄를 지으면 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축하를 받습니까? 1년여 걸렸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께 죄송했습니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당선시킨다고 고생하셨는데 다시 1년 동안 고생을 더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사건과는 달리 국회의원 혼자 아니고 유권자 전체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보다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선무효된 의원들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가 제 직업이고 또 제가 당해 보니 얼

마나 억울할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의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의원 해서는 안 될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면 수십 명 아니라 전체라도 날리고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말꼬리 잡기 같은 황당한 이유로 당선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 1인당 평균 20만이 뽑습니다. 그 많은 국민이 오랜 시간 고민하며 내린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그렇게 쉽게 무효로 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 위반 전문입니다. 17대 때는 제 집사람이 선거 3개월 전에 오라는 자리에 불려가서 딱 세 마디 했습니다. ‘최구식 아는 사람이다. 신식이 아니고 구식이다. 잘 기억해 달라’ 이 말이 사전 선거로 걸려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구형은 100만 원 받았는데 1심에서 실형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집사람이 돈이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당선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하면서 이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당선무효를 시키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들으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 법정에서 있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 경험에 따르면 20만 명이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원 되는 절차 중의 첫 절차에 불과합니다. 술한 난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상대 후보 잘 만나야 고소 안 당합니다. 검사 잘 만나야 합니다. 1심에서 판사 잘 만나야 합니다. 2심에서 판사 잘 만나야 합니다. 3심에서 판사 잘 만나야 합니다. 물론 좋은 변호사 만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선거가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의 기준은 돈과 권력일 것입니다. 표를 돈으로 매수하느냐 권력으로 강탈하느냐 하는 문제가 선거를 가르는 기준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관권 선거, 금권 선거 있습니까? 제가 17대부터 선거를 직접 해 봤는데 지금 선거에서 돈 봉투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서 선거할 때 아직도 돈 봉투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뽑는 것을 한자로 ‘거(擧)’라고 합니다.

거에는 천거도 있고 과거도 있고 선거도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가장 비싸고 효율 떨어지는 것이 선거입니다. 수만 혹은 수십만 명이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하는 것이 결국 한 사람 뽑는 겁니다. 천거나 과거, 요즘으로 치면 고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에 비해서 너무나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이 주권을 위임하는 중요한 자리는 귀찮고 비싸더라도 직접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요새는 모든 자리를 다 선거로 뽑아야 민주주의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거는 반드시 해야 할 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하기는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2년 이하는 너무 짧고 5년이 넘으면 너무 뜸하기 때문에 대체로 임기가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잘해 놓고 해마다 봄·가을로 선거를 합니다. 작년 총선에서 무슨 관권이 있었고 금권이 있었습니까? 그런 선거 해 놓고 올해 봄에 선거하고 올가을에 다시 하고 내년 봄에 또 합니다. 할 때마다 ‘미니 총선’이라면서 당이 총동원되고 국회의원이 총동원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국민은 그렇게 싫어하고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 나오면 또 난리입니다. 당이 그렇고 국회가 그렇고 정부가 그렇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마치면 또 선거를 몇 번 할지 모릅니다. 정치 혐오가 유독 심하다는 나라에서 정치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인 선거를 왜 이렇게 해마다 봄·가을로 합니까? 어디에 좋습니까? 정의를 세웁니까? 나쁜 사람 쫓아내고 좋은 사람 뽑습니까?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물론 선거 많이 해서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 컨설턴트, 여론조사기관, 선거브로커 더제가 들 수 있지만 더 들지 않겠습니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구형을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저는 박 의장을 취재도 했고 모셔도 봤는데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꼽습니다. 의장 마치고 깨끗하게 정계 은퇴했습니다.

의장 되고 일주일 지나고 관훈토론회에서 정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까 하다 보면 마음 바뀔까 봐서 아예 갑관에 몸을 묶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경륜이 높으니 많은 곳에서 강연요청을 합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연구소에서 돈을 좀 받은 모양입니다. 정치자금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해서 재판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게 강연에서 나라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정치활동이라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허탈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발언하지만 좀 겁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이면 국회의원 날아갑니다. 한 번은 문상을 갔는데 어느 분에 제게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느 선관위의 국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하도 겁이 나서 제 참모들한테 모든 것은 다 선관위에 물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숲 설 때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어떤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의원직 상실 사례가 총 5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3건은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연방에 대한 불충죄라고 합니다만 남부에 속했던 의원인 모양입니다. 다른 2건은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 영국은 20세기 이전에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총 3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증, 서명위조, 정부자금 사적 유용 등입니다. 독일은 50년대 3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헌정당 판결 및 의원직 승계 관련 소송 이런 겁니다.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2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입법조사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얘기는 할 것이 없고 2004년 선거법, 현행 우리가 보고 있는 선거법, 2004년은 당해 년의 선거였으니까 2005년에 선거를 열 번 했습니다. 2006년에 여섯 번 했습니다. 2007년에 세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총선이 있었으니 없고 올해 10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도 10건이고 그러니까 이 선거대로 하면, 그리고 다른…… 그 규칙을 준용한 것으로 해서 다른 선거는 지금 보니까 2002년부터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해서 528번의 재·보궐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

라입니다. 제가 이 말 했다고 또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받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리나라를 지금 나라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드는 우리가 서로 신뢰가 없고 정치가 흔들리고 하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은지 저는 무죄가 되었습니다마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숙 의원님 계시지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만 바로잡히면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시작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시간을 더 쓰실 줄 알았더니 이 정도 해서 감사합니다. 아주 심경을 울리는 절실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시간을 허용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나라당에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이달곤 장관님, 또 이기선 국장님 고맙습니다. 늦게 끝까지 참여해서 저희들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최구식 위원님 말씀에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닿는 위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너무 경직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충조 위원장님처럼 유연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화되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선거기간에 당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말씀하실 때 다 떠오릅니다. 선관위가 너무 경직화되어 있어서 사실 크게 보면 선거법이라는 게 나쁜 짓 하지 않고 평범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돈을 돌렸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요. 저 같은 경우도 큰돈을 주고 선거후보 사무실에 사진을 걸어놨는데 제가 박근혜 대표랑 좀 친해서 박근혜 대표랑 찍은 사진을 크게 걸어 놓았어요. 그런데 사진을 그냥 그대로 붙이면 저하고 박근혜 대표 사이가 너무 멀어서 그것을 가운데 아무것도 없

는데 약간 붙여놓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려다니고 저렇게 불려다니고 결국 중앙선관위에서는 괜찮다, 그게 지역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중앙선관위에서 그것은 사진을 조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해서 무혐의로 판정났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내가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게 절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선거법에 걸린다는 거지요. 마치 선관위가 경직화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구식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참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선관위에서 선거 때 격무라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조그마한 실수로 국민의 선택을,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잠깐 여쭙어 볼게요. 법인단체 기탁금 문제인데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한 이유는 불법 정치자금 또 정경유착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정치자금 기부를 개인의 소액 기부로 한정함으로써 정치자금은 더 모으기 어려워지고 또 기업들은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 증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데 대체로 보면 독일은 정당법에 의해서 법인단체도 정치자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자금 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노동조합법, 정당·선거및국민투표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고 있고 또 정치자금 기부 시에 주주들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 로비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경우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기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기업이나 단체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과거에 법인단체와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그동안 허용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법인단체에도 선관위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낼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를 통해서 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특정 정당하고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구상찬 위원 이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이나 정부 여당이나 돈이 없어서 절절매거든요.

아까 국장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의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자기의 기부금을 냄으로써 그 정당의 정책에 동의를 하는 그런 선거의, 또 정치의 일환이거든요. 정치행동의 일환이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것은 다변화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것은 여당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똑같이 잘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을 하셔서 제가 이것 하나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제 생각은 소선거구제로 할 필요가 있다, 정당 공천문제입니다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요새 현재는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공직자 선출제도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선거, 시의원선거, 구청장 다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런데 유독 기초의원만 왜 중선거구제를 하는지 이것 제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초의원선거도 결국 이번 선거법 개정 때 같이 고민을 해서, 대표성에 있어서 광역의원과 차별이 불명확하고 또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선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소선거구제로 돌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기초의원이 늘어난다고 싫어하시지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례대표를 없애면 돼요. 비례대표를 없애고 소선거구제로 가면 특별한 그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정치적 판단은 우리 정치인들이 하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보편성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것이 없는데 선관위 생각은 어떠냐를 여쭙보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선거는 다 소선거구제인데 이것만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모든 선거구 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얘기는 너무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현재 결과를 잘 준용하셔서 판단하셔서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구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하면 이후에 질의하셔야 될 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열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한 번씩 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경우를 생각해서 보충질의 내지는 추가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은 그 사이에 회의장에 입장을 할 경우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7분 이내에 제대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서 당초에 보충질의 시간을 5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시간도 7분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구상찬 위원 예, 저는 좋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5분으로 할까요, 5분으로?

○구상찬 위원 아니, 그냥 다 하시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충조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은 시간 욕심이 많으시니까 5분 그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순서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한나라당 구상찬 위원님.

○구상찬 위원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계속 시간 때문에 못 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원협의회 아까 말씀하시다가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과 원내정당화 유도를 위해서 지구당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구상찬 위원 그게 2004년 3월 달인가 폐지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지역 단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기구로 당원협의회를 두어서 자율적으로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당원협의회 운영이 정당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정당법을 개정해서 당원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요? 시·도 당 조직이 하부조직으로서 당원협의회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런 언론의 시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원협의회가 사무실을 둔다고 한다면 과거에 지구당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다시 재연되지 않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다시 부활이 되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 하면 회계 부분입니다. 회계 부분 잘못했다가, 아까 최구식 위원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회계 책임자가 약간의 실수만 해 버리면 이게 또 배지 날아가요.

그래서 회계 부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가, 또 사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정치자금법에 보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부분과 관련된 회계 관련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준수된다고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선관위의 경직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각 정당이나 후원회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협의회 사무실이 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지구당 당원협의회를 법정 기구로 해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회계 부분인데 회계 부분은 선거법하고 바로 연결

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도를 조금만 잘못하면, 법원에서 선관위의 지시를 받아서 해도 잘못된 규정에 의하면 위법의 경우에는 위법으로 판례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선관위의 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것을 다 일반 지구당 부활하는 느낌의 당원협의회를 둔다면, 말단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구당 단위별로 선관위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구·시·군 단위로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중앙선관위의 경우는 고도의 지식을 갖고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도를 하지만 현장에서 부닥치는 것은 다 지구당 관리 수준이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구당 관리에……

정식 회계사 같은 사람이 없으면 대책이, 저희 지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직원이 합니다. 매일 가서 물어봐야 되고 또 잘못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되면 법원에 가서 문제가 있고, 이런 특별한 계도에 대한 무슨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해서 회계와 관련된 불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위법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구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위원장 김충조**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거든요.

서갑원 위원이 오셨기 때문에 서갑원 위원님이……

○**서갑원 위원** 먼저 하시고, 박선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충조** 그러면 보충질의 민주당의 박선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민주당 박선숙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과정에서도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요. 정치자금법 2조의 “타인 명이나 가명으

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실제 적용될 때 기부자에게만 범법행위로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부받은 자인 예비후보자나 정치인들에게 동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원을 받은 정치인이 누가 후원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타인 명이나 가명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지금 상태,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적용되고 있어서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차명이나 가명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박선숙 위원 그 문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 공청회 과정에서 한번 선관위하고 제가 질의답변을 나눈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행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적용에 의해서 후원회에 기부한 자가 누구인지를, 정치인이 누가 자신의 계좌에 후원금을 넣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확인해 주지만 실제로 입금한 자가 기부자라고 당연히 생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치자금법의 2조는 타인 명이나 가명 기부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것이 기부행위 금지만이 아니라 기부받는 행위 금지까지도 적용이 되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가지고 이 법의 조항이 실제로 양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적절한지, 지금과 같은 기부명의자가 곧 기부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방식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곽정숙 의원님도 안을 내놓으셨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방도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으로서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명목은 여성 추천 보조금인데 실제로 배분을 할 때에는 기준을 의석수와 직전 선거 득표율로 하고 있거든요. 추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게 아니라

당선된 의석수와 득표율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설정한 애초의 취지와 기준이 불일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곽정숙 의원님 안을 포함하여 선관위에서 좀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지금 배분 지급 대상 정당을 선정할 때는 추천 비율을 고려하면서 실제로 배분액을 결정할 때는 추천 비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액의 20%는 추천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만들어 제출을 했습니다.

○박선숙 위원 저희가 법안을 검토할 때는 애초에 입법취지에 따라서 추천 보조금이니만치 추천에 대한 배분 비율이 선관위에서 생각하시는 20%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이은재 의원님도 법을 내셨지만 저희 민주당도 지금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30% 여성할당제, 특히 비례대표에서의 할당제를 법에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답변하셨지만 다시 한번만 의견을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 지역구를 말씀하십니까, 비례대표를 말씀하십니까?

○박선숙 위원 비례대표는 할당을 퍼센티지를 좀 더 높여서 명시하는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역구 후보자의 할당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수준에서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시점에서는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역구 여성 30% 할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은 강제되어 있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의무화했을 경우에, 물론 여성의 정계 진출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당의 자율성 침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례대표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50%를 여성으로 하고 있고 홀수마다 여성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을 넘어서

3분의 2 정도를 여성 할당하도록 한다 그랬을 경우에 성비가 거의 5 대 5인데 3분의 2 정도를 여성 할당하면 또 다른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지역구에서 워낙 차별이 심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갑원 위원님 첫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서갑원 위원 민주당 전남 순천의 서갑원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해서 의사표현 자유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몇 가지 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공선법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서 사실상 그 법 규정 자체가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이를 어길 경우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실제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거의 선거법 위반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처럼 선거운동기간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실제 외국에 이런 입법사례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일본이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체제입니다.

○서갑원 위원 일본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일본이 먼저입니다.

○서갑원 위원 일본 것을 우리가 해 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서갑원 위원 그러면 구라파나 북미나 또는 다른 나라도 그런 예가 좀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좀 더 앞서 실시하고 있고 또 선거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들에서의 경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라는 특별한 제한도

없고요, 방법에 대한 제한도 없고 상당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렇지요?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이지요? 이게 YS 때 역사적으로 각 당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선거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서 칼국수도 먹도 잔치도 벌이고 했었는데 그때 핵심 요지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입은 열고 돈은 막는다’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선거를 치렀습니다마는 선거법 진행 과정을 보면 돈 막는 것은, 특히 지난 참여정부에 획기적으로 선거 혁명, 정치 혁명이라고 할 만큼 우리 문화 자체까지도 다 바뀌서 돈 막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마는 돈은 막았으면 입은 열어 줘야 되는데 입도 같이 어느 순간 다 막혔어요, 대단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나라에서 선거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됐고 투표율도 대단히 낮고, 특히나 출마한 후보자들이 누군지를 유권자들이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제한적으로 있고 기간 자체도 짧고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다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제한 기간이라는 큰 틀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선거법이 너무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실은 위원님들도 힘드시지만 저희도 상당히 힘듭니다.

○서갑원 위원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 나라도 비용으로 규제를 하고 선거운동 방법은 자율적으로 허용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든, 비방이라든지 허위사실 이런 것만 아니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돈이 안 드는 선거운동 방법, 위원님 말씀하신 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명함을 돌린다든지 뭐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이 정도의 선거운동 방법은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죽 검토한 바로 지나치게 특히 현역 위주로 되어 있어요. 저도 현역입니다마는 정치 신인들이 또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 선거를 하는데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도도 낮고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사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없거든요. 그것은 형평성에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인터넷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겠다, 지난번 작년에 낸 선관위 의견서에 보니까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냈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을 첨부해서 정당의 홈페이지도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문제는 이것 보니까 그러나 아직 실명제를 꼭 도입해서 실명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법에 의해서 이미 실명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굳이 따로 우리 선거법에 그것을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싶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글 외에 부호·음성·화상·동영상 등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하는 게 실지로 실효성을 거두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것은 저희가 규제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규제를 하는데 오히려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것은 글보다도 더욱더 자극적일 수 있고 더욱더 비판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을 한 것이지 오히려

어떤 규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글뿐만이 아니고 동영상도 우리 선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허위 사실이라든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왕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그 취지에 맞게…… 이게 지금 종이문서 또는 문서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금 인터넷시대에 동영상이나 또 음성·부호 이런 것들은 결국 인터넷문화를 같이 이해해야만 할 일이지 우리가 종이매체 인쇄의 문화를 인터넷문화와 동일시하는 데서 약간의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새로운 문명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문화 자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그런 제안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그 제도 자체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현행법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글과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기재하자는 그런 취지였지 앞으로 인터넷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선거에 관한 것은 괜찮고 비방이라든지 흑색선전, 허위 사실 이런 부분만 규제하게 될 것입니다.

○**서갑원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서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역시 첫 번째 질의로 한나라당의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의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결국 이 획정을 달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선거구 획정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물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평균인구 플러스마이너스 60%의 인구 편차니까 4대 1이란 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4 대 1입니다.

○張倫碩 委員 국회의원 선거는 3 대 1까지 허용한다…… 그러면 이 현재의 결정대로 하게 되면, 평균인구 플러스마이너스 60%로 하게 되면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금 시군구에서 2명의 도의원을 배출하는데 전국에서 한 3개 군의 경우는 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대표성 문제하고 충돌이 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군은 인접한 다른 군 또는 시군하고 통합해서 한 개 선거를 만들어서 도의원을 뽑으면 되기는 하겠지요. 마침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 때문에 몇 개 시군이 통합해서 1개의 선거구를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지역 시군의 지역 대표성에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는 지역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표성도 최소한 보장을 하고 현재의 결정도 존중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행안부하고 또 선관위하고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체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총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행안부장관님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역과 통합하는 것이 아마 인구비례를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지역 대표성 같은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시군에 관계없이 1개의 선거구, 물론 인구가 많은 시의 경우는 2개 선거구 또는 3개 선거구로 갑니다마는 어쨌든 2명을 배출하든…… 광역의원을 1명으로 주는 데도 꽤 많거든요, 이 현재 결정에 따르면. 그것만 해도 그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 인구가 전부냐.

그런데 또 그것은 그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한 사람도 배출을 못 한다 이렇게 될 때는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현재의

결정이 투표가치의 평등, 인구비례의 원칙을 살리되 최소한도 시군이 1명은 배출을 해라 하는 것을 두고 그다음에 평균인구를 가지고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헌법적 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 지금 2명씩 일률적으로 배출했을 때에 현재가 어떤 결정을 한 것 그 정신을 살리더라도 1명을 시군에 보장을 한다 할까요, 배출하게 하고 인구비례 평등을 맞추어 가면 그 정도는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혹시 행안부 장관님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세 분이 하다가 두 분이 하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두 분이 하다가 한 분으로 되는 데는 전국에서 76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혹은 4분의 1 사이인데 약 30% 정도의 변화가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주 과소군하고 섬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판결을 산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표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무슨 원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회에서 논리를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다면 시도위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재정의 원리로 볼 때 또 지방자치 혹은 지역정치라는 원리로 볼 때 사실상의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인구에서 또 하나의 기준을 아주 어려워지는 지역에는 추가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이것은 시간이 좀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張倫碩 委員 예, 물론입니다.

그다음에 재보궐선거를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하셨는데 최근 한 이십수 년간 선거가 없었던 해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대선, 총선, 지방동시선거 외에

그 3개의 큰 선거가 없는 때는 재보궐선거는 꼭 있었거든요. 물론 선거가 축제라고도, 민주원리에 비추어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 그로 인한 부작용, 폐단…… 지금 선거법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보궐 또는 재선거의 경우에 굳이 선거를 하지 않고도 대표성을 가진 후보 대표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선관위가 그동안 선거 관리를 해 본 관점에서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사항이어서 총장님께서 ‘이것은 관리하는 저희들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특위에서 해 주세요’ 이렇게 답변하시려면 아예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글썄요, 지역대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張倫碩 委員 대표를 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표를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에서 간다든지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그 지역의 대표성도 얼마든지 반영이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뽑지를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실은 자기들의 진정한 대표라고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張倫碩 委員 보충질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장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한나라당의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의원의 경우에 지금 사실상 중·대선거구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그것은 입장이 곤란하신지 하여간 의견표명을 안 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의견표명은 그렇게 중립적 입장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되면 기초의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느냐,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소선거구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별로 1명씩 뽑는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이 조금 전에 장운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물론 광역의원의 경우입니다마는 기초의원의 경우도 결국 마찬가지로 원리가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장님,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기초의원의 경우도 읍·면·동별로 인구편차가 4 대 1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 다시 위헌결정을 받을 소지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지요, 소선거구제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4 대 1,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읍·면·동별로 1명이 안 되고 합쳐지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소선거구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체 인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은 선거구 확정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늘지 않도록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김기현 위원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제 생각으로는 하여간 이름 그대로 기초의원인데 광역의원·기초의원을 똑같은 선거구로 해 가지고 뽑으면서 누구는 기초의원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광역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그대로 기초의원은 기초의원답게 선거구에서 뽑아야지 어떻게 광역에서 뽑아 놓고 기초의원이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이름 자체에서 벌써 맞지 않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당연히 소선거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기초의원에게

게는 맞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서 앞뒤가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소선거구제로 빨리 환원해야 된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시외전화하고 이동전화요금을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김기현 위원 그것 제외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 왜 제외해야 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과거에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이동전화가 일반화돼 있고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의견을 제출을 해서 이 부분도 선거비용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왜 그것을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성윤환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에 들어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들어가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진술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만약에 거기에 불응하면 형사처벌,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김기현 위원 이게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성 의원님 발의 내용 말씀하십니까?

○김기현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은 지금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헌법상 설립된 기관인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지휘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관위 직원이면 헌법 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헌법기관의 소속 직원입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법 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헌법 아래에 있지,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회도 헌법 아래에 있듯이 선관

위도 헌법 아래에 있는데 헌법에 의하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저희는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김기현 위원 조사하는 것하고 수사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김기현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하고 진술 요구하는 것 그게 조사라고 표현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협조적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김기현 위원 아니, 협조적 차원이 아니라 그것 불응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잖아요. 진술이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까지 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조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수사’라고 이름 붙이는 그것은 우스운 얘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름을 조사라고 붙이느냐 수사라고 붙이느냐 그것은 그냥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고요.

영장 없이 강제로 조사를 하고, 수사 아니라 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영장 없이 강제로 조사를 하고 헌법상의 자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원에서마저도 재판받을 때도 자기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자기부재 금지의 원칙이, 대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선관위는 헌법 위에 있어서 ‘당신이 니 죄를 알렸다! 니가 자백해라! 자백 안 하면 너를 형사처벌한다!’, 자백 안 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형사처벌한다, 이게 허용되는 것이겠습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 그 부분은 선거부정 단속이라는 어떤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기현 위원 특수한 목적이, 선거사범의 단속이라는 게 헌법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것입니까?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 살인이 있는지 없는지 수백 수십 명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조사하는 가치가 훨씬 더 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 영장 없이는 강

제수사를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장님,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식품위생법에도 보니까 행정기관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

○**김기현 위원** 그것 과태료도 있지 않던가요? 그게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김기현 위원** 그러면 그 법도 당연히 위헌이니까 고쳐야지요.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대면 됩니까? 그러면 고쳐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선관위 입장에서 자꾸 조사의 편의를…… 아까 최구식 위원님 말씀도 구구절절 뭔가 느끼는 바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회지정권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직접 가져오는 사람한테 받은 다음에 후원회에 전달해서 후원회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지금 현행법상 허용이 안 된다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취지가 직접 돈을 주는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가 받아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온 사람들이 ‘후원금 줘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받아 가지고 후원회에다가 일정기간 내에, 지금 개정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내도록 돼 있는데 30일 이내에 전달하도록 해 가지고 정식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혹시 총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후원회 제도를 둔 것은 정치인들이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원회 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수수한다면 후원회 제도를 둔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기현 위원** 후원회에서 회계를 다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총장님은 지금 계속 다른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김기현 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 허용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제3자가 부담하는 것도 기부행위로 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제3자가 부담을 한 경우 그것을 가지고 일정기간 내에 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면 결국 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은 개정할 의향이시고요, 국회의원이 직접 받아서 바로 30일 이내에 후원회에 전달해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 겁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 총장님도 저렇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보충질의 내지는 추가질의 해 주실 분이 권영길 위원, 정진섭 위원, 최구식 위원까지는 순서가 결정이 났습니다. 또 장윤석 위원님, 서갑원 위원님, 그리고 양승조 위원님.

이범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범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그러면 다음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다뤄야 될 시급하고 뜨거운 과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는 기초단체장·의회의 정당공천의 문제, 중선거구나 소선거구나 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성할당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당공천과 선거구제에 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총장께서는 직접적 의견 피력을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또 거론한다는 것은 총장님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여성할당 문제에 관해서만 의견을 한번 구하고 참고자료를 또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할당제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하자고 많은 위원들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저어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당내 규정입니다마는 지역구도 그렇고 공직선거 선출 후보의 여성할당제를 당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구가 10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여성할당제가 여성이 30%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모든 후보의 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원이 10개 구가 있다 그러면 30%가 되어야 당내에 있어서의 등록이 전체적으로 되고 안 되면 전체적으로 무효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할당제를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례가 아니고 지역구를 말합니다. 이게 역차별을 두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 강제규정으로 만들었을 때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여성할당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프랑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역구 30% 할당의무제 그것이 위헌되는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권영길 위원 역차별을 이렇게 뒀을 때의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30%……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당마다 공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마다 공천을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은 쪽은 아예 접수가 등록이 안 되는 강제규정을 두자고 했을 때 만약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글썄요,

제가 위헌 여부를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각 정당에서 스스로 할당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마는, 50% 해도 상관없고 한테 이것을 법으로 모든 정당에 강제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한다면 각 정당 내부의 당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유럽 쪽에서 지역할당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지요, 강제규정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규정으로 하는 나라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자료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지금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것 한번 조사를 하셔서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조 위원장, 장운석 간사와 사회교대)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현재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확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영길 위원 파악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여기 보면 대만의 경우에 헌법에 10% 할당제 규정이 있다고 돼 있고요.

○권영길 위원 유럽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리고 프랑스에 남녀동수법이 있는데……

○권영길 위원 프랑스가 그렇게 돼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프랑스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 위원 프랑스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만들 때 우리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었을 텐데 그런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좀 조사해 가지고 참고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제가 조금 더 할까요?

○委員長代理 張倫碩 더 하실 질의가 있으면 조금 더 하시든지요.

○권영길 위원 이것도 그러면 정당공천의 문제가 많이 따르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 너무 심한 강제규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천에 실제적으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향식 공천제도를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상향식 공천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강제했을 경우에 역시 정당의 자율성 침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길 위원 정당의 자율성 침해 문제…… 선택권의 문제지 강제규정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을 요할 것 같습니다.

○권영길 위원 예, 되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총장께서 핵심적인 문제에 가서는 정치인 답변처럼 기술적으로 다 비켜가 버리시네요.

○委員長代理 張倫碩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말씀은 주민투표법이 현재의 운영 상황을 보면 3분의 1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렵다, 또 여러 가지 방해행위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투표법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면한 시군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님은 기초의회의 의결로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통합 내에 하남이라고 하는 시는 지금 시의원이 5명 있는데 그 5명이 이 통합의 문제를, 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개의 기초의회가 그런 부담 때문에 결국은 주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갈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초의회가 예컨대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먼저 부친 다음에 시의회의결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선 당해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제가 회부를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예컨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다음에 회부를 하게 되면 다시 단체장한테 내려갑니다. 주민투표의 발의 여부는 또 단체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국회의 의결은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가 이 문제를 결정하기 부담스러워서 주민투표를 거치기를 희망하는 것이 보편의 모습인데, 그래서 시장하고 시의회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주민투표를 거쳐야겠다 이렇게 장관께 건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것은 아직까지 제 입장을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정진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도 좀 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정진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주민투표에 갈 경우에 3분의 1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나 아니면 유형·무형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면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는 지금 주민투표로 가는 것의 결정 여부를 아직까지 의회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통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만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가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시될 즈음에는 선관위에서 주민투표 관련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투표 방해 요인이라든지 왜곡 행위를 금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인데,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개봉을 못 하는 상황에 왔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진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정진섭 위원**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정진섭 위원** 내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안양 시장하고 통화를 좀 해 보았는데 지금 안양의 분위기가 매우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의 문제 때문에 통합을 배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정진섭 위원** 그런데 그럴 바에는 처음서부터 여론조사는 뭐하러 하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데, 그 입장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의견조사 여부를 주민투표법을 참고해 가지고 지역 주민과 지역 의회로부터 신청이 오는 것은 주민 의사를 물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의견조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물론 이 지역은 선거구에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세 지역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의견

조사 결과가 선거구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한 지역을 빼고 두 지역만 찬성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발표를 할 때 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러나 공신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이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진섭 위원** 하여튼 안양 쪽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사무총장님, 정치자금법상 현재는 후원금이나 여러 가지를 법인은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런데 법인도 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선관위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소위 오세훈법에서 법인들을 못 내게 했던 때의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런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후원금을 못 내게 하는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바꿀 때. 유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인은 못 내게 하자고 금지를 시켜놨는데 지금 선관위가 법인은 낼 수 있게 하자라고 의견을 낸다면 그때 그것을 제한했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시느냐 이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지금 법인이 정치자금 기탁하는 것은 선관위에 기탁을 해서 선관위에서 국고보조금 배분 방법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정진섭 위원** 후원회하고 관련이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후원회는 관계없습니다.

○**정진섭 위원** 법인은 후원회에는 계속 못 내게 하는 것이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중앙당으로만 내는 것으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중앙선관위에……
- 정진섭 위원 지금은 중앙당도 후원회가 없는 것이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정당후원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다 기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배분해 주는 것에만 법인이 내게 하는 것을 의견을 내셨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내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할당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속 계셨는데, 권고를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막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그 선거구 전체를 통괄해서 등록을 받거나 말거나 하기 때문에 강제가 가능하지만 지역구 선거에는…… 예컨대 저희 광주시에 각개로 후보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30% 할당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등록을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게 지금 중앙당에서 전체 공천하지 않는 한 30% 할당 확인 여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 정진섭 위원 그렇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 정진섭 위원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제도로 제안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 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張倫碩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구식 위원 사무총장께 묻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이 조항이 몇 개입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280개 좀 넘습니다.
- 최구식 위원 제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여쭙어 보고 당혹스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261개로 알고 뒤에 부칙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밥은 되고 떡은 안 되고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가안, 예를 들면……
- 최구식 위원 이만하데요, 두께가. 해설서까지 하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 최구식 위원 그래서 선관위에 따라서 혹은 선관위 직원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고 해 가지고 하여튼 곤혹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까.
(장윤석 간사, 김충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선거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구에 어디 있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우리나라 선거법이 좀 규제가 심한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구식 위원 아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일본하고 저희가 좀 비슷한 체제입니다마는 아마도 저희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구식 위원 일본이 있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 최구식 위원 일본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태까지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일본을 본받은 게 많지요? 지금 중대선거구 얘기하는 것도 일본을……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이지요?
지금 선관위는 중대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선거구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 최구식 위원 석패율제라는 것을 1999년에 한번 제안하신 적이 있지요? 99년에 선관위 제안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 최구식 위원 석패율제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일본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지난 8·30인가 총선에서 바뀌었습니다마는 일본 자민당에 그 선거 전에, 올 8월 까지 세습 의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미안합니다. 저는 총리께 질문할 때도 그렇고 그런 숫자 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자민당의 3분의 1 정도가 세습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14.5%가 세습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엄밀하게 보면 92년에 정권교체를 하고 그 뒤에 이리도 해 보고 저리도 해 보고 요리도 해 보고 조리도 해 보고 모든 정권교체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일본은 올해 8월에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성공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습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당해서 안 됩니다.

저는 우리는 일본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발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늘 일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앞선 나라를……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고 정치부 기자를 했고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참으로 멀리 달려왔고 아직까지 선거를 제대로 못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거도 잘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국민의 감시 시스템도 거의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감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공포감에 질려 가지고 지금 이려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자꾸……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선거구제만 하더라도 특정한 정치세력 쪽에서는 그게 무슨 큰 훌륭한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유신 때부터 5공 때까지 1구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5공이나 유신에 대해서는 치를 떠는 분들이 그게 지역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게 1구에서 2인 이상을 뽑는 선거제도를 가

지고 있는 나라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버뮤다, 피지, 라오스, 태국, 쿠웨이트, 레바논, 튀니지, 에콰도르, 세네갈,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 대만은 하다가 지난 2004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빠져나갔지요. 일본도 여기 끼어 있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끼어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들하고 같이. 일본도 도저히 안 돼서 96년에 다시 소선거구로 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름 알 만한 모든 나라들은 다 1구에서 1인씩 뽑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는 그 본질은 부패했느냐, 권한 남용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특별한 권력형 부패나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또 권한 남용이 그리 있습니까? 그런데 싸운다고 늘 질타를 하고 세계 꼴등이라 그러는데 세계 꼴등이라고 했던 그 언론을 보니까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싸울 때 그 싸우는 게 돈을, 부정부패 하려고 혹은 권한 남용 하려고 싸우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대변하는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데, 3명이 모여도 싸우는 판에 300명이 모였는데 그게 조용한 게 이상한 거지요. 북한 국회는 조용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역사적으로 중첩되어 있고 하겠지만 정치에 대해서, 저는 이번 존경하는 김충조 위원장님 계시는 이 정개특위에서 나라가 이제 이런,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싸움을 조장하거나 제도적으로……

선거를 하면 싸움이 생기는 거지요. 당에도 싸움이 생기고 여야 간에 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지요. 해야 될 선거를 해야 되는 건데 해마다 봄·가을로, 말하자면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이 선거 아닙니까? 그걸 해마다 봄·가을로 하니까 당도 계속 싸우게 되는 거고 여야도 계속 싸우게 되는 거고 싸우다 보면 관성이 붙어서 더 싸우게 되는 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하도 이걸 생각을 오래 한 게 되고 해 가지고 너무 할 말이 많아서……

하여튼 논의의 과정이 시작됐으니까, 또 김용희 국장님이십니까? 참 존경하는 선관위 분들하고는 제가 아주 기자 할 때부터 가까이 지냈는데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

를 쓰시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체적으로 한번 의견, 지혜를 모아서 이제 정치를 좀 제대로, 선거를 제대로 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참으로 간곡하게 바랍니다.

장관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최구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조 위원 양승조입니다.

장관님, 세종시 변경고시 아직도 안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양승조 위원 하여튼 강한 유감을 일단 표하고요.

세종시 설치법이 언제까지 통과되어야 그 세종시법에 따른 관할구역의 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 점은 지금 행안위 전체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역산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상당 부분이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기한이 정해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리실에 정해진 민관위원회의 결정이 1월 말에 나와진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조치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빠듯한 그런 일정이고, 만일 그 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청원군의 2개 면의 포함 여부를 결정을 하면 시간은 사실상 대단히 빠듯한 그런 스케줄입니다.

○양승조 위원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시한 볼 때 최소한 정기국회 정도에는 통과되어야, 정부부처는 별개로 치고 세종시법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래도 적어도 정기국회……

○양승조 위원 그래야 내년도에 현실적으로 선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연내에 통과되어도 뭐 굉장히……

○양승조 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남으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굉장히 빠듯합니다.

○양승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총선이 투표율이 한 50% 정도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또 지방의회선거 같은 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 보궐선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표성 문제가 따릅니다, 과연 그분들이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 또 득표율이 한 40%니까 사실 한 8% 정도를 득표해서 당선되는 지방의회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 투표율 제고가 굉장히 현안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잘 마련하고 완비를 하더라도 정당성부터 의문시된다, 흔들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 보는데 이런 투표를 한 사람에게요, 투표를 한 분에게 어떤 대폭 인센티브를 주는 예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면 사실 차를, 버스를 타고 나가고 그러면 또 그날 하루 버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날 하루 버스요금하고 식사 한 끼 정도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그걸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는 아주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대략 우리가 한 4875만이고 유권자가 70% 정도 되면 한 34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70% 투표한다고 볼 때 한 2388만 명 정도 대략 나오는데 이분들에게 버스요금 왕복요금액 플러스 어떤 점심이 될 수 있는 거를 쥐도 국가 차원에서 아주 큰 비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도 무료로 공원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주는데요.

○양승조 위원 팔순 어르신이 무료로 공원 가실 분이 많지 않습니다. 공원이 없는 데가 많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건 일부 나라에서 유인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예, 그 점에도 좀 깊이, 우리 총장님하고 장관님 깊이 연구 좀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양승조 위원 저는 그런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만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

에서 저희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국공립 유료시설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면제·할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그것이 제정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더 개정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좀더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그래서 보건소 진료비 또는 민원서류 땔 때 수수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의 수강료 이런 것을 할인·면제하는 그러한 개정의견을 현재 내놨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투표 참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못 간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전투표제 또 통합선거인명부로 해서 자기 선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의 투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구 내 어디서 가든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통합선거인명부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총장님, 진일보된 생각이신데요.

직접적으로 일반적인 혜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도 없고요, 또 군에서, 예를 들어서 강좌는 돈 들이고 오라 해도 안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온적인 대처고, 한번 적극적으로 방안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위원장님, 답변이 길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그러세요.

○양승조 위원 마찬가지로 선거에 몇 해 이상 불참했을 때는요, 특히 선출직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임용할 때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나갔는데요. 입후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최근 4년간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한 어떤 증명서를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공직 같은 데서도 면접시험 때 좀 참고하도록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물을게요.

후원금 문제, 후원을 없애는 방안을 권경석 위

원님께서 마련해서 내셨는데요. 그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지금 사실 후원금 모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후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후원의 밤을 허용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정당공천제를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비례대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진출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그러면 만약에 지역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비례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했을 때, 이원적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보면, 지금 만약에 기초의회에서 중대선거구가 유지됐을 때 말이에요, 보통 4명 뽑는 데는 후보자가 10명이 넘습니다, 무소속까지요. 10명이면 당선자도 10%를 득표하지 못하고 당선이 돼요.

그런데 현재 선거자금 보전이 15%, 10%지 않습니까? 15%가 전액, 10%가 50%인데, 이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이걸 대폭 낮춰서 100%를 한 10% 득표했을 때, 한 7~8% 내지 5% 정도를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의 입장에서는 현장을 보면 반드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가 지금 작년 총선에 당선무효형을 받으신 의원님들이 한 열 분 정도 돼서 재보궐선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가.

그래서 물론 돈 드는 선거, 어떤 유권자를 금전으로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근절해야 될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냥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당선무효까지 간다, 적어도 한 20만 가까운 분들이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뽑은 대표자인데 이런 당선무효형이 이렇게 남발돼도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들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모 안 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했습니다.

후원의 밤을 통해서 모금하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보면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당공천제 지역구에는 하지 않으면서 비례대표에는 도입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글썽 이건 꼭 안 된다 하기도 그렇고 이건 뭐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진 기준이 의원 수가 많았을 경우에 사실상 10% 얻기도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15% 이상'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후보자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별화하는 그런 어떤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당선무효자가 많은 것, 다른 나라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끝났지요?

○양승조 위원 예.

○위원장 김충조 양승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민주당의 서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마는 요령껏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갑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거의 다 총장님께 질문이 집중이 돼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장관님은 그냥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고생하십니다.

선관위에서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니까 선거인명부를 투표구 단위가 아니라 선거구 단위로 통합해서 활용해 보자, 이런 근거규정을 마련했네요. 투표율과 선거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아마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각종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고민이 많고 또 문제점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획기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선관위에서 전국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해서 전국 단위의 선거에 활용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그러한 준비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 단위, 통합선거인명부는 유권자들이 자기 투표소가 아니고……

○서갑원 위원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선거구 내 어디 가서라도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통합선거인명부 프로그램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이것이 완성이 될 텐데 이것이 되면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학교 선거든지 조합 선거든지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사실상 이것이 전국 단위의 선거까지 아직 시행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갑원 위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이런 계획 같은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힘듭니다. 이것은 재보궐선거에서만 우선적으로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 확대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갑원 위원 사전투표제, 제법 논의를 했습니까마는 사전투표제 역시 통합선거인명부와 결합해서 시행된다면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무적 검토 차원일 수도 있겠고 또 혹시라도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 개정의견을 냈고요. 이 부분도 통합선거인명부 제도와 마찬가지로 우선 재보궐선거 등 작은 단위 선거부터 우선 시행을 한 후에 확대하도록,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갑원 위원 지정기탁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저에게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또 올 7월의 선관위 개정의견에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지정기탁금제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상

여야 정당 간의 심각한 후원금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임을 우리 선관위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96년에 여당이 340억,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야당이 0원, 단 한 푼도 야당한테 지정기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 97년에도 역시 여당이 360억, 야당이 0원.

이렇게 실제로 이 운영에 있어서, 여당에게 정치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됐던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회창 총재 스스로 이 제도를 폐지하자 해서 폐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랬는데 지금 사정이 달라져서, 우리가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이 지정기탁금 제도가 그러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용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지정기탁금 제도는 어떤 특정 정당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죽 부활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각 정당의 정치자금 사정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각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탁금 제도가 있는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내는 어떤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현재는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배분되는데 과연 기탁금을 갖다 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일부라도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여 일부만 지정기탁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서갑원 위원 선관위의 여러 가지 현실적 고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까마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폐해가 지금 다시 다 치유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견 단순하게 지정기탁자가 본인이 원하는 정당에 기부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열

마나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까 96년, 97년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권에서 크게 문제됐을 때도 역시 그렇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에, 국민의정부 5년 참여정부 5년 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에서나 또는 당시 여당에서나 또는 야당에서 이 지정기탁금제를 다시 부활하자 이런 요구를, 이런 주장을 한 번이라도 들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없었던 걸로 압니다.

○서갑원 위원 없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서갑원 위원 없었거든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탄압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에도 사실은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 폐해 때문에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선관위에서 제안한 대로 50%의 지정기탁 나머지는 지금 현행 방식대로 배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나라당이 지금 80% 이상 가져가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래, 누가, 다른 정당이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정기탁금을 많이 받아라. 지정기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선관위의 고민은 고민이지만 또 일부 아까 위원님들, 기탁자들의 자율성 그런 부분이 상충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치문화와 관련된 것이고 또 기부문화와도 연관이 있고 이게 단순하게 기부문화가 정상적인 기부문화가 아니고 권력과의 깊은 함수관계에서 고민하고 또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참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개 선거나 동시에 치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걱정이 많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

서 봐도 선거 공고만 해도 곱하기 4만 해도 32번 아십니까? 32번인데 4 이상은 훨씬 더 될 건데 어쨌든 선관위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대단히 크겠고 또 우리가 선거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유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을 좀 어떻게, 어떻게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내년 8개 지방선거를 하다 보니까 우선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서갑원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저희가 송파를 한번 측정을 해 봤는데 송파구의 경우에 투표용지만 420만 매입니다. 공보가 5400만 매, 이렇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를 치르려면 무엇보다도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고 업무량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만 특히 그중에 보면 후보자 등록을 한 5일 정도 앞당기고 5일 텅을 뒀다 그다음에 선거 운동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약간 변칙적인 것입니다마는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등록 끝나고 바로 선거운동 들어가게 되면 후보자들도 인쇄물을 인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5일 정도의 기한을 뒤야 후보자들도 홍보물을 인쇄할 수가 있고 선관위에서도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고 그런 현실적인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 의견을 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가급적 저희로서는 빨리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일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위원 당적 보유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신 것을 보면서 좀 우려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서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張倫碩 委員** 사무총장님 오전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궐위가 났을 때 그 지역 시민 유권자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다시 뽑아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면 다른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독일의 경우에 지역구 의원이 궐위될 때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그 궐위 의원이 속한 권역의 권역별 정당명부에서 차 순위 예비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다만 궐위되는 의원이 무소속일 경우에는 정당명부가 없으니까 부득이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전국 단위 비례대표니까 다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냐’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이제 유권자들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무슨 선거법 위반 문제가 제기돼서 자리가 비면 이 분들이 이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전제하에서 정당투표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전제라면 지역 주민의 요구와 조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니까 법리상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張倫碩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 후원금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법인은 후원금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탁, 그런 출연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법인인 기업과의 유착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당시의 사정이 다 해소됐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권에 관련되는 오해가 있는 대기업은 제외하고 건전한,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특히 이 조직 단체가 협회나 조합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그런 범위 내의 법인의 후원금 기탁은 열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혹시 선관위로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까? 아마 단계적으로 선관위에서는 후원금으로 가지 말고 선관위에 기탁을 하면 ‘우리가 나눠 주면 그런 우려는 없겠다’ 그런 단계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냥 후원회에 그 정도의 문은 열어줘도 안 되겠다, 문이 열리면 걱정이 많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제 견해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중앙당의 후원제도를 열어 두어서 법인이 중앙당에 후원금이랄까요, 정치 자금이지요 기탁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적으로 하자는 건데 그 당이 받을 때 또 걱정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도 같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張倫碩 委員** 걱정이 많으시고만요. 좋습니다.

그다음은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대선구제 중·대선구제 얘기가 나오다가 과거에 정치권에서 그러면 인구비례 문제도 있고 농촌지역의 인구를 고려해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 도시지역은 중선거구제로 혼합하면 어떻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난번에 공청회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정치·선거학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들은 깜짝 놀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접근으로 그런 사고를 했는데 학자들은 대표성 당선결정방식 선거구 문제를, 같은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나 선거구의 크기 조정인데 이걸 농촌 도시로 나누어서 달리한다는 것은 학자들로서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 말하자면 유례가 없는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선관위에서 그런 학자들 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하고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張倫碩 委員** 없습니까. 지금 들어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유례가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조금은 이상하긴 한데, 제도로서……

○**張倫碩 委員** 제도로서 뭔가 변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장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추가질의 순서가 다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가질의로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위원** 존경하는 서갑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추가질의를 새로 하고 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워낙 중요한 자리이고 제가 여태까지 별말씀을 하지 않다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시작을 한 마당이 돼서 말씀을 조금 많이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서갑원 위원님이 소위원장을 맡으셨기에 정치자금법도 해결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선거법 소위에 들어 있어서 정치자금법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정치자금이 외국의 경우에, 이 외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잘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제 주변에는 ‘최구식이 같은 놈이 정치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돈은 본인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구식 돈 주면 저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살 거다’ 해 가지고 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의 근본정신이 되는 정경유착 문제, 지금 국회의원이 무얼 해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지금 정경유착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자기한테 돈 준 사람한테 이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공 일입니다.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출구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감시됩니다. 저는 지역 내려가는 차비, 기자들하고 식사할 때 말고는 저는 책 살 때도 정치자금으로 안 합니다. 책 사는 것은 된다 그러던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불려 다니기 싫어 가지고요. 안 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정치자금의 출구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 지금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그런데 정치자금 후원자, 돈이 조 단위도 넘는 분이 100만 원, 200만 원을, 좋아

하면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인데. 그런데 해마다 공개됩니다. 마치 무슨 엄청난 검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수사할 때는 범죄의 단서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 쓰고 말자는 주의를 지금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권경석 의원안에 찬성합니다. 지금 제가 거지도 아니고 누구한테 돈 달라고 얘기를 어떻게, 평생 안 해 본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해 가지고 쓰는 게, 제가 진주 갈 때 다 비행기도 공짜로 타는 줄 압니다마는 비행기 샀다 냅니다. 다 내고 29번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돈에서 쓰는 겁니다, 정치자금 가지고. 딴 데 어디 씁니까? 누가 술집에 가서 씁니까? 저는 식당하고 차비 말고는 전혀 안 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입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매우 공적인 일입니다. 공무원들 공무 할 때 다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돈 달라고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봐야 500만 원이고, 그리고 그 돈 많은 분들은 이름 오르내릴까 봐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화시켜 가지고 공영제 개념으로, 하여튼 권경석 의원 법안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제가 사무총장님 뵙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서갑원 위원님,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서갑원 위원 예.

○위원장 김충조 최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제2차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마는 사무총장님, 제가 위원장석을 떠나서 질의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구식 위원께서 조금 전에 후원받은 정치자금으로 책도 사지 않는다, 조사받는 게 귀찮아서 그렇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부받은 후원금, 정치자금 그것으로 책 사는 것도 안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사적 용도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국회의원이 책 사는 게 무슨

사적 용도가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봤을 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사는 책인데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을 얻어서 비품을 산다, 책 같은 것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후원회 지정권을 상실했을 때, 다시 말하면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하는 자격 상실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실 비품, 책도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시세를 쳐서 그것을 국고에 반납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위원장 김충조 그러면 그래야 됩니까, 책도?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책을 좀 사 볼까 하고.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얘기가요. 정치자금이라 해 두고 쓰는 용처가 너무 제한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정치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번에 법 개정하시면서 좀 개정됐으면 하고,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그러면 이것이 한 가지이고, 한 가지는 아까 통합선거인명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위원장 김충조 선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언젠가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자세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이게 전국 단위로 통용시키기에는 어렵다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 기술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산 때문이 아니고요, 통합명부를 하면 자기 투표구가 아니고 어디 가서든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투표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와 같이 종이 투표용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투표용지가 소요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인쇄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돈도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권 일부에서 통합선거인명부제, 참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한 선거에서의 예상되는 부정 이런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예상되는 그런 부정 같은 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부정이라고 한다면 대리투표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통합선거인명부로 해서 전산으로 확인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그게 커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실시 자체를 할 수가 없겠지요.

○**위원장 김충조**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서갑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갑원 위원**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선숙 위원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5항에 보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해서 차명이나 가명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이 경우에 국회의원 등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서갑원 위원** 그런데 우리 정치 현실에서 보면 후원인이 실제로 자신의 돈으로 후원하였는지 일일이 물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후원금을 냈는데, 그리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500만 원 이내지요. 그러면 전화해 가지고 “이것 당신 돈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 돈인데 당신 이름으로 대신해서 낸 것 아닙니까?”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서갑원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요. 후원금 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니 돈이냐, 다른 사람 돈이냐를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기억도 못

하는 후원인 중에서 누군가가 훗날, 한참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악의적으로 “그 돈은 사실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줘서 그 돈을 당신한테 후원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수사를 받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 지정권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서가 아니고, 이처럼 1만 원이든 1000원~500만 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는데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 돈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한 건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거니와 또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일일이 선관위에 다 신고하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돈은 다른 사람 돈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를테면 그때 전화로 “넣었습니다. 한도가 500만 원까지인데 2000만 원씩 또 1000만 원씩 해서 몇 사람이 분산해서 냈습니다”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아 버리면 이 후원회 자체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후원회 지정권자들은, 후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은 검찰의 수사대상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노출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냥 예로 내가 지금 재판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후원금 취지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 자체의 문제를.

그러면 실제로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 조항 자체도 문제가 돼서, 결국 이 조항 갖고 문제가 돼서 결국은 사법처리 대상이 본의 아니게 된단 말이지요, 결과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조항이 사실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총장님?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아니, 재판 중인 사안 가지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을 가지고 실례를 든 겁니다마는 이 조항 자체를 갖고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서갑원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글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뭐……

○**서갑원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

○**서갑원 위원** 의견들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이현령비현령 일 수 있다 또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조항이어서 충분히, 확실하게 법의 목적이 또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개정해서 보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충조** 서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양승조 위원님이 추가로 하실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양승조 위원** 서갑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마찬가지로인데요. 총장님 잘 아시다시피 문석호 전 의원님 재판받고 있는 건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양승조 위원** 그런데 보통 10만 원씩 들어오는데 누가 확인합니까, 의원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면 혹시 확인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만 원씩 들어오는 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거든요. 더구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세액

공제받으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 원인가 이 소액을 갖다가 기부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분 이름으로 했나 일일이 전화 걸어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돈이냐, 아니면 누가 준 거냐, 확인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분명하게 나름대로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의정보고서 발송할 때 우편요금을 세 번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세 번 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

○**양승조 위원** 세 번입니다, 세 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승조 위원** 아,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강하게 의견 좀 내 주시라는 거예요. 우편요금을 세 번에 한해서는 3분의 1을 지원합니다. 3분의 2 부담인데, 저희 천안 지역구를 예를 들면 9만 5000가구입니다. 그러면 110원 정도 돼요, 3분의 1 지원받더라고. 그러면 우편요금만 한 1200만 원 듭니다. 의정보고서 보통 만드는 데 제작하고 편집하는 데 아무리 싸게 잡아도 2000만 원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들면 의정보고서 자체를 내는 게, 도저히 못 냅니다. 저희는 의원으로서 의정보고서를 자주 내고 국민들한테 자꾸 보고를 드리는 게 당연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더구나 세 번 넘으면 우편요금을 다 본인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자금 내지 본인 부담. 그러면 9만 5000가구면 우편요금만 3400만 원 정도 듭니다.

저는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국회 차원보다도. 선관위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당연히 의정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적 사신(私信)이 아닌데, 의정보고서인데, 의정보고서를 도저히 부담 때문에 그때마다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국민에게도 우리가 죄송스러운 일이고, 여러 가지 제도의 본질상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 입으로 자꾸 후원금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후원금 문제도, 의정보고서 발송하고 제작하고 그런 것에 비추어볼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의정보고서거든요. 거기에 과연, 현재의 한도

액 1억 5000만 원이 적절한 건지. 가구 수가 보통 10만 가구, 9만 가구 되거든요, 대체로. 이랬을 때 도저히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선관위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깊이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하게 질의해 주셨고요. 또 행안부 장관님과 선관위 사무총장님, 꽤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끝까지 진지한 자세를 보여 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심의한 법률안들을 오늘 오전에 구성한 바 있는 2개의 법안심사소위에 구분하여 회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0항까지 79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9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6까지 7건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7항부터 제109항까지 3건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0항과 제111항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과 청원을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81항부터 제85항까지 5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98항까지 13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및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오늘 구두질의로 못 하신 분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갑원 위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11월 18일까지 질의하신 서갑원 위원님과 특위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서면질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님과 중앙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님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남아 주신 여러 위원님들, 경의와 감사를 함께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구상찬	권영길	김기현	김충조
박선숙	서갑원	양승조	유기준
이경재	이범래	이용경	이은재
이춘석	장윤석	정진섭	최구식
최재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권경석 이계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정부측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제2차관 강병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기선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주호영	이은재	한나라당	2009.10.12

○의안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09. 9. 23 권택기·정태근·현경병·백성운·강승규·조문환·김영우·조진래·이화수·김재경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09. 9. 23 권택기·정태근·현경병·백성운·강승규·조문환·김영우·조진래·이화수·김재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4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09. 9. 28 박정숙 · 이정희 · 홍희덕 · 권영길 ·
강기갑 · 박선영 · 김춘진 · 신낙균 · 박은수 ·
유성엽 · 조승수 · 최영희 의원 발의)

9월 2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
발의)

(2009. 10. 28 이계진 · 신학용 · 정영희 · 유기준 ·
최영희 · 유성엽 · 손범규 · 이해봉 · 이인기 ·
박은수 · 이한성 의원 발의)

10월 2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5 양승조 · 조영택 · 최영희 · 송민순 ·
김춘진 · 백원우 · 전현희 · 최재성 · 박은수 ·
강창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5 서갑원 · 신학용 · 김상희 · 양승조 ·
박은수 · 김성순 · 강운태 · 우제창 · 백재현 ·
김우남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6일 회부됨